

## 반-억압 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은 한국사회복지(학)에 적용가능성이 있는가? : Lena Dominelli의 실천과 이론 중심으로

양만재 (경북대학교)

### 1. 서 론

반-억압실천(Anti-Oppressive Practice: 이후 AOP로 표기)은 1960년대 말 영국에서 사회복지 실천개혁의 배경으로 발전한 사회복지실천론이다(Dalrymple and Burke, 1995; Dominelli, 2002). AOP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하고 있고(Larson, 2008;Baines, 2011a),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도입되어 교육하고 있으며(Coleman, et al., 2002;Collins and Wilkie, 2010),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실정이다(Baines, 2011;Brown, 2012;Nissen and Curry-Stevens, 2011;Strier and Binyamin, 2013;Beckett, 2013; Rush and Keenam, 2013).

AOP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실천접근 방법을 극복하고, 클라이언트의 의식과 개인에게 미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서 클라이언트에게 존엄성을 강화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복지실천론이다. 사회복지학계에서는 AOP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실천들이 연대하여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론이라는 점에서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실천모델”로 불리기도 한다(Sakamoto, 2007;Curry-Stevens, 2011;Baines,2011a).

AOP는 단일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사회 이론과 관점 즉 여성해방론, 막시즘,

---

\* 양만재, 경력: 경북대학교 졸업, 영국 Durham 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박사 경북대학교외 강사  
관심 분야: 지역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실천 이론, 반억압 실천과 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토착론(indigenization) 등 다양한 관점들을 수렴·통합하여 창조한 점에서 절충주의 성향을 가진 사회복지실천론'이기도 하다(Payne,1997;Baines, 2011c). AOP가 다양한 사회이론들을 포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자들이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 현장과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론(문헌검토 참조)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 AOP를 쉽게 비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지닌 “성우”(sacred cow)로 비유한다(Willson and Bresford, 2000).

영미와 유럽국가의 사회복지학계는 AOP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사회복지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복지학계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사회복지학계가 미국의 학문성향 즉, 사회복지체계이론과 생태학적 사회복지실천론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은 탓도 없지 않을 것이다(최일섭, 2007;나병균, 2013).

한국사회복지계에서는 미국의 학문적인 편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복지실천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실천현장에 종사하는 실천가들에게 편식에서 벗어난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이근무·김영숙,2009). 한국사회복지학계가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과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 AOP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의 특징을 AOP를 주창한 Dominelli(1997b;2009)의 언어를 빌어 표현하면, 한국사회복지실천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개인 중심의 “치유적 접근”(therapeutic approaches)과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현상유지적 접근”(maintenance approaches)에 근거한 개인변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들이 사회적 환경 변화를 위한 비판의식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불평등구조의 변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해방론적인 접근”(emancipatory approaches)의 사회복지실천과 연구는 경시한 성향이 있다. 박선영(2016)의 주장 즉 사회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하여 억압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정의와 연결된 실천을 소홀했다는 해석과 다르지 않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 사회복지학계는 해방론적 접근과 사회정의의 가치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통찰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AOP가 해방론적인 접근과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실천론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복지학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요소가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노정에 있다면, AOP에 관한 연구를 계속 외면해야 할 주제는 아닐 것이다. AOP가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요구사항인 사회 불평등에 대응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이론적인 자원이 있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AOP가 한국사회복지계에 적용 가능성 혹은 유용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반-억압실천(AOP)의 정체성을 우선 밝히는 작업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AOP의 정체성에 관한 해명 작업은 먼저 AOP가 출현하는 외부환경 분석에서 시작한다. AOP가 등장하게 된 사회정치 배경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어 문헌 검토의 작업으로 AOP를 제안한 대표학자들의 문헌과 AOP가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 적

용한 연구논문들을 소개한다. 문헌검토는 AOP의 사회복지실천론의 위상과 연구 경향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내부 시선으로 돌려 AOP의 정의와 주요 원칙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다. 정의와 원칙은 AOP의 창조에 주도적인 기여를 한 Lena Dominelli의 이론중심으로 논의한다. AOP의 후학들의 이론도 추가할 것이다. AOP의 핵심원칙을 선호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동시에 비판하는 학자들도 분명 있다. AOP의 장점과 비판들도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AOP의 정체성을 밝힌 담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적용 가능성을 함의 장에서 긍정과 부정의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 2. AOP의 정체성

AOP가 무엇인가? 이를 답하기 위하여 AOP 출연배경, 문헌검토, 정의와 실천원리, 비판 등의 순으로 논의하자. 먼저 AOP가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을 기술한다.

### 2-1. AOP 출현의 사회 정치적 배경

AOP는 영국의 “급진사회복지실천”(radical social work)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급진전통의 뿌리는 C. Barnett, A. Toynbee, B. Webbs 등이 창설한 “인보관 운동”(Settlement Movement)에서 찾는다. 인보관 운동은 19세기에 창립된 “자선조직협회”(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표방한 개인주의적 빈곤관과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체제를 외면한 실천가들의 개입에 도전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시선을 두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의 능력을 증대하고 주민과 함께 사회체제를 변화시키고자 시도한 운동이 인보관 운동이다. 이 같은 실천이 영국의 급진사회복지실천론의 토대가 되었다(이강희외, 2011; Lavalett and Ferguson, 2007; Ferguson and Woodward, 2009; 박선영, 2016). 1960년대는 Bertha Reynolds(1946, 1951)와 동료들이 빈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입하기보다 개인 및 사회구조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AOP의 원칙과 근접했다. 1970년대의 급진사회복지실천 전통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의 모델을 도입한 학자들과 실천가들이 *Cane Con* 잡지를 통해 확산시켰다.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의 부재나 실패가 아닌 정치와 구조적 불평등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은 “정치적 활동”(political activity)의 성격을 내재하며, “계급투쟁의 중심” (Bailey and Brake, 1975) 혹은 “지배계급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구”로 해석했다 (Corrigan and Leonard, 1978). 급진사회복지는 개인적 수준에서 약자를 돕는 실천을 넘어 사회와 경제적 구조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계급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계급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실천에 역점을 두었다(Ferguson and Woodward, 2009; Turbett, 2014). 이 같은 급진사회복지실천은 AOP가 대동할 지적인 인프라로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학계는 급진사회복지실천론에 관해 비판을 제기했다. 80년대 서구사회에서 흑인 차별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고 또한 1960년대부터 여성의 억압과 차별 문제를 설명하고 대응하고자 페미니즘 사상이 확산되면서 서구사회의 사회복지실천계는 계급실천모델에 의한 약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계급적인 사회지위 변수이외 인종, 성, 나이 등의 요인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작동하는 억압의 다양한 형태에 관한 이론과 실천이 필요했다. 이에 부응하여 “반-차별실천론”(Anti-discriminatory practice)(Thompson, 2001), “반-인종적 실천론”(Anti-racist practice)(Ely and Denny, 1987; Dominelli, 1997)과 “반-억압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 등의 실천론이 등장했다(Payne, 2005).

AOP가 영국사회에서 발전하게 대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OP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법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영국은 사회적 불평등과 흑인 공동체에 대한 인종차별로 인해 사회적·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 흑인 사회운동가와 사회복지실천가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교육, 주택정책에서 차별적인 복지 정책에 완강한 저항 운동을 펼쳤고 “반-인종주의사회복지실천”(anti-racism practice)이 중심으로 부각되었다(Bhatti-Sinclair, 2011). 차별에 대한 저항적 실천에 반응하여 영국의 사회복지교육 협의회(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Social Work: CCETSW)는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위한규칙과 요구사항’ 2판 (Paper 30)에서 반-차별 실천 혹은 반-억압 실천의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교육협회가 AOP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학계가 적극 개입하여 실천현장에 AOP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Paper 30는 주로 인종 변수에 따른 차별에 집중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 2006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나 2007년 평등 법안의 입법화로 사회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AOP가 영국 사회복지학계와 실천현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되었다(Dominelli, 2009).

정치적 분위기도 AOP의 확장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0년대는 M. Thatcher 대통령이 사회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시장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전개했다(Ferguson and Woodward, 2009). 이러한 정책 집행과정에서 폭동이 발생하는 등 흑인과 경찰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사회복지관련 대학생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복지협의회교육에 반인종적인 실천 조항을 설정하게 하였으며 많은 지방정부가 반 대처주의 정치문화를 확산시켰다. 런던시의회(The Greater London Council)는 1982년에 “반인종적 존”(anti-racist zone)을 만들었고 1984년에 “반인종의 해”(anti-racist year)를 선언했다(McLaughlin, 2008).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정책에서 점차 불평등한 차별과 억압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정치시선이 성, 장애, 나이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반 인종 실천론이 확

산과 함께 다양한 억압의 형태를 분석하고 억압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역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AOP 확장의 또 다른 요인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페미니즘의 사상의 확산도 부정할 수 없다. 인간 주체 형성에 언어와 권력의 작동 메카니즘과 다차원적인 억압의 유형과 정체성의 유동성과 다중성의 담론을 인정하는 “다양성”과 “차이”의 가치와 해방론적인 관점을 대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사상이 AOP의 토대가 되었다(Baines, 2011b). M.Foucault(1980)의 권력담론도 권력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생산적 측면을 AOP원칙의 지적자원으로 도입하여 권력에 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

## 2-2. 문헌검토

AOP에 관한 연구문헌들은 상당히 방대하다. 그것들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지면의 제한으로 불가능하다. AOP의 창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L. Dominelli와 J. Dalrymple와 B. Burke의 문헌을 소개하고 AOP를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한 문헌분석을 간단하게 언급한다. 이는 AOP의 위상과 연구동향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기에 제한적으로 기술한다. AOP의 원칙과 이론을 표방했을 당시 AOP를 비판한 주요문헌은 비판의 장(2-7)에서 검토하기로 하자.

AOP용어는 L. Dominelli가 1991년 최초로 사용했다. 1991년 이후부터 그녀는 당시에 지배했던 전통적 실천에 반기를 들면서 AOP의 이론과 원칙을 제안한다. 당시 주류 사회복지실천론은 체제의 기능에 순응하는 수단적인 기술의 습득을 강조한 “능력 기반 접근”(competency-based approach)에 의거한 실천론이라 평가했다. 사회복지실천가는 클라이언트가 현존 사회체제에 잘 순응·적응하고 그 체제의 부적응은 심리적 치유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치유적 기술을 소유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복지실천이기도 하다. AOP는 전통사회복지실천론에 맞서 대안적인 실천론으로써 등장했다. 실천의 무게를 사회실천가 중심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동시키면서,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을 생산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실천론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Dominelli, 1996). 2000년대 들어 AOP 창조를 주도한 L. Dominelli는 세계화물결의 맥락에서 AOP의 정당성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억압과 차별을 진단하고 개인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총체적인 개입의 맥락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AOP가 개인과 집단, 조직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변화를 위한 실천론과 정당성을 『반억압 사회복지이론과 실천』(*Anti-Oppressive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책을 통해서 밝혔다(Domenelli, 2002a). 이후 Dominelli는 AOP의 반대와 비판을 의식하고 AOP의 확산과 이론적 지평을 심화시키는 논문들을 계속 발표 하고 있다(2002b, 2009, 2010a).

Dalrymple과 Burke(1995, 2006)가 L. Dominelli를 이어 AOP의 토대를 구축한 초기학자들이

다. 이들은 N. Thompson(1993, 2001, 2003, 2006, 2008, 2012)의 “반 차별적 실천”(anti-discriminatory practice:ADP로 표기)에 견주어 공통성을 인정하면서도 차별성을 부각시켜 AOP의 정체성을 밝힌다. 클라이언트의 차별문제는 실천가에 주어진 가용한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ADP이다. 예컨대 흑인의 차별문제가 있다면 ADP<sup>1)</sup>는 흑인 문제는 백인실천가 보다 흑인실천가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여 흑인복지실천가를 배당하는 입법화를 통해서 접근한다. 그러나 ADP와 달리 AOP는 실천가의 교체로 문제에 국한 하지 않고 다각적인 실천방안의 적용을 통해서 필요한 입법화를 모색한다. 흑인과 백인의 차별문제와 인종변인과 무관하게 차별의 대응은 AOP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방안 등을 법으로 제도화하거나 활용하는 접근과 실천원칙을 제안한다. Dalrymple과 Burke가 제안한 4가지의 실천 원칙은 첫째 가치에 기반 한 실천을 중시하고 가치 갈등을 밝히고 그 가치 갈등의 해결은 법에 근거하는 것, 두 번째는 역량강화로 개인의 위치와 구조적 불평등의 관계에 내재된 사회문화 요인 및 권력의 관계에 의한 정치의 통제역량을 소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실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의 파트너쉽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신중한 개입 즉 최소한 개입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들은 실천가의 개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개입의 신중성과 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을 경계하여 “최소한 개입”(minimal intervention) 보다 “최소한 침입”(minimal intrusion)의 단어를 선택한다(1995, p. 81).

J. Dalrymple and B. Burke는 실천의 개입에서 최소한 개입과 법에 의존하여 개인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는 점에서 ‘소극적인 반-억압실천론’(passive anti-oppressive practice)을 전개한다. 이에 반해 L. Dominelli(2002)는 실천의 최소한 개입을 언급하지 않고 또한 법과 절차에 의거한 Dalrymple와 Burke의 실천은 “복잡한 사회적 맥락”(complex social context)을 경시했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그녀는 억압의 정체성에 관한 다차원적인 맥락에 견주어서 진단하고 개인과 사회구조의 변혁을 모색하는 해방론적 원칙에 근거한 AOP를 제안한 점에서 ‘적극적인 반-억압실천론’(dynamic anti-oppressive practice)으로 이름 붙이고자 한다. 이들은 사

1) AOP와 ADP는 표현은 달리해도 서양학자와 실천가들은 억압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론이라는 뜻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AOP 주창자들은 ADP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L. Dominelli는 억압과 차별을 진단한 시각이 N. Thompson이 제안한 ADP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ADP가 클라이언트(개인과 심리)를 둘러싼 환경을 구조와 문화 수준에서 접근하는 PSC(personal/structural/cultural)모델에 근거하여 억압이 위계관계를 부각시켜 비교적 단순하게 제안했다면 L. Dominelli(2002, p. 4)는 개인 수준을 넘어 제도, 문화, 지역, 국가, 세계적, 자연환경과 영성(spiritual) 환경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성의 맥락(multidimensionality context)에서 불평등한 사회현실에서 억압과 차별이 발생한다는 접근을 강조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변호한다. Payne(2014, p.375)은 Dominelli가 Thompson 보다 “이론적으로 포괄적”(theoretically comprehensive)이고 시선이 “국제적”(internationally)으로 평가한다. 이에 Thompson(2012)은 Dominelli가 자신의 이론을 오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회정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점에서 실천의 동일성은 갖지만, 포괄적인 시각과 법적인 근거를 통해 ADP와 차별화된 AOP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AOP는 다양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하여 AOP의 강점과 한계를 논의한 연구문헌들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AOP의 이론 개선과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한 연구문헌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OP의 이론과 실천은 현대사회복지실천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적용영역이 치매에서 공공서비스와 조사, 윤리 등 거의 모든 사회복지 영역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복지실천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현대사회복지실천론 즉 “비판적 실천”(critical practice)(Adams,2002), “변혁적 실천”(transformational practice)(Adamas et al., 2005), “비판적 최고 실천”(critical best practice)(Ferguson, 2008a)등은 AOP와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등장한다(Burke and Harrison, 2009).

<표 1> 2000년 이후 AOP의 이론 개선과 사회복지실천적용 문헌

연도	학자	AOP 적용은* 으로, AOP 개선은# 으로 표기.
2000	G. W. Martin and D. Younger	치매*
2001, 2005, 2009	D. Cliford and B. Burke	사회복지조사윤리와 실천윤리*
2002	A. Chand, J. Clare and R. Dolton	사회복지실천교육*
2004, 2010	S. Pollack	여성죄수*
2005	I. Sakmotor and R.O. Pitner	AOP에 비판의식 통합#
2006	J. Tew	권력#
2007	I. Sakmotor	이주자*
2007	S. Todd and D. Coholic	기독교근본주의자 교육*
2007	R. Strier	사회복지실천조사*
2007	L. Barnoff and K. Moffat	억압유형#
2008	J. Fish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2008	J. Macdonald	만성통증질환자*
2008	G. Larson	정신건강*
2008	M. Millar	AOP 비판#
2009	R. Danso	숙련된 이주자*
2009	L. Parrott	문화적 능력 심화#
2009	J. Aronson and K. Smith	저항*
2009	R. Adams, L. Dominelli, M. Payne	복잡성과 불확실성*
2010	M. Graham and J.H. Schiele	영국과 미국 실천 비교*
2010	R. Strier and S. Binyamin	빈곤층*
2010	B. Mullay	억압#
2010	S. Collins and L. Wilkie	AOP 교육과 학습#

연도	학자	AOP 적용은* 으로, AOP 개선은# 으로 표기.
2011	A. Curry-Stevens	옹호*
2011	G. de Montigny	성찰적(reflexive) 사회 관계#
2011	G. Dumbrill	아동보호*
2011	D. Baines	옹호, 조직화, 사회운동*
2011	B. Freeman	원주민(aboriginal)*
2011	S. Wehbi	지역사회조직화*
2011	S. Greene and L. Chambers	지역사회기반 조사*
2011	L. Barnoff	조직 변화*
2011	D. Baines	노동조합*
2012	J. Rogers	사회복지조사에서 권력*
2012	J.M. Hines	동성애자*
2012	L.B. Nissenand A. Curry-Stevens	복지실천가의 훈련*
2013	R. Strier and S. Binyamin	공공서비스*
2013	A.E. Beckett	장애인*
2013	M. Rush and M. Keenen	복지국가유형에 따른 AOP*
2013	J.Y. Yee, C. Hackbusch, H. Wong	체계적 변동#

### 2-3. AOP 정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의 축소

AOP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L. Dominelli는 AO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서비스이용자와 혹은 실천가들과 함께 활동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회분열(social divisions)과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형태이다. AOP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욕구에 반응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욱 적합하고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AOP는 인간의 삶에 구조적 불평등이 생산하는 악의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평등의 가치체계 즉 사람중심의 철학과, 과정과 결과에 초점을 둔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 또한 AOP는 실천가와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실천하는 현장에서 상하 위계관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구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Dominelli, 1993, p. 24; 2002, p. 6)

L. Dominelli의 AOP 정의는 사회복지실천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구조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세계사회복지학협의회와 세계사회복지연맹(IASSW and IFSW, 2001; IFSW, 2014)이 사회복지를 정의하면서 기술한 사회정의와 인권의 원칙과 거의 일치한다.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축소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사람을 중시하는 인간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실천가는 전문성에 의거 실천가가 주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보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실천하는 ‘집합적 전문성’(collective profession)을 선호한다. 사전에 결정된 규제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응을 돕는 원조적인 실천이 아닌 과정을 중시하면서 불평등을 유발하는 개인의 의식과 인간 간의 권력관계와 사회적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적인 규칙(rule)의 변화를 모색하는 “변혁적 실천”(transformative practice)의 가치를 지향한다. 사회적 지위에 무관하다는 진술은 인간에게 부여된 사회적 범주, 예컨대 성, 나이, 교육, 장애, 민족, 계급, 동성애 등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차별을 반대하는 "평등"의 실천이다.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선언을 넘어 불평등을 생산하는 억압하고 차별하는 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치적 행동을 요구하는 “급진적 평등”(radical equality)가치이기도 하다(Solas,2008).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문화와 제도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즉 권력차이의 최소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Dalrymple와 Burke(1995, p.3. 164)도 AOP를 “사회에서 권력차이를 최소화”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실천”으로 정의한다. L. Dominelli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정의이다. AOP는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의 “입법화”(legislation)를 중시한 점에서 L.Dominelli와 차이가 있다.

AOP에 관한 정의에서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위계관계의 최소화는 권력의 관계최소화라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성되는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권력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억압관계의 형성은 사람들 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불평한 관계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과 자원접근에 공식적으로 혹은 합법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즉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타자화의 과정”(othering processes)에서 발생한다. AOP가 실천현장에서 상하관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의 최소화라는 진술은 억압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클라이언트의 해방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L. Dominelli는 억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억압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형식으로서 사회적 현장에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억압은 사람들이 타인들과 함께하는 행위와 타인들을 향한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억압적인 상호작용적인 성격은 억압적인 관계가 사전에 설정된 결과를 유발하는 결정적인 세력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만남과 관계를 지속시키는 관행적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행위를 재생산해야만 한다. 그래서 억압에 저항은 늘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저항은 개인적이거나 구조적인 두 가지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개인과 집단을 통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Dominelli, 2002a, p.9)

억압은 사람의 삶의 개인적인 수준과 집합적인 영역에서 내재하며 억압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서 역동적인 권력관계를 형성·재형성하면서 변혁시키는 즉 “억압의 역동성”(dynamics of oppression)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억압은 지배자가 약자로 하여금 대등하거나 평등한 권력관계의 조성을 위한 접근기회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약자 스스로가 수동적이고 열등하며 병리적인 정체성을 당연하게 인식하도록 개인적 혹은 집합적인 수준에서도 유도한다. 이를 Dominelli(2002a, p.10)는 “억압적인 인식 프레임” 혹은 “대안가능성이 부재한 정체성”이라 했다. 한편 지배자로부터 억압당하는 피억압자는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강자를 향해 저항하거나 분노하는 실천을 중시한다. 클라이언트의 불의를 직면한 사회복지실천가의 분노는 사회적 불의를 양산한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개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OP의 후학들 가운데 Mullaly(2010)는 AOP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분노는 사회정의를 실천으로 옮기고 해방을 위해 계속 투쟁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원동력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불의를 재생하는 억압과 차별<sup>2)</sup>은 행위자에게 고정된 실체로서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시키는 변수가 아니라 행위자가 상황에 비추어 타인에게 다양하게 작동하는 “유동성”(fluidity)의 변수로 전제한다. 행위자나 집단이 상황에 따라 억압자가 되기도 하고 피억압자의 지위로 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억압자는 헤게모니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억압에 단순히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억압적인 상황을 인식하여 타인과 더불어 인식하고 억압구조의 변화를 위해 반성하고 행동하는 능동적 이고 “주체적인 존재”(agency)로 간주한다(Dominelli, 2002a).

Dominelli(2002a)와 AOP의 후학인 Mullaly(2007,2010)는 AOP에서 억압은 고정적인 실체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다양한 사회문화와 정치경제의 맥락과 미시적이며 거시적인 수준 등이 결부된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지며, 지배와 피지배의 상호 관계적 개념으로 설정한다. 인간에게 다양한 수준과 맥락과 관계의 복잡성을 통해서 작동하는 억압의 현상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변혁은 AOP가 행복한 삶의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 설정한다. 이는 억압과 차별에서 인간의 해방을 개인적인 심리적인 수준을 넘어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미시적인 수준과 이 수준을 제약하고 촉진하는 사회제도와 문화와 정치경제의 체제의 맥

2) 억압(oppression)과 차별(discrimination)의 의미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분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집단 즉 지배집단이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경우, 이를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그 차별은 불이익, 고통, 멸시 등의 억압의 주요 원인으로 억압과 동일하게 사용한다(Thompson, 2002). 한편은 두 단어를 구분하기도 한다. 억압은 사회적 권력의 남용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멸시 등이라면, 차별은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과 오해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멸시로 간주한다. 전자는 권력 남용에 무게를 둔다면 차별은 문화적 자원에서의 오해와 갈등에 시선을 둔다(Payne, 2014). 본 논문은 동일하게 사용되 억압은 권력의 남용에서 비롯된 인간의 대우와 접근의 차별이며, 억압은 Iris Young이 사회적 불의에서 비롯된 지배관계의 5가지의 형태로 이해한다.

락들에 견주어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위한 개입을 실천하는 “해방론적 접근방식”의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Dominelli, 1997b). 개인의 억압과 차별을 단순히 사회 환경적인 맥락에서 진단하고 개인을 해방하는 실천론이 아닌 다양한 맥락에서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적인 변화에 방점을 둔 실천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실천론은 바로 현상유지와 심리적 치유에 역점을 둔 “주류사회복지실천론”을 넘어서고 사회정의와 인권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론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alrymple와 Burke(1995)도 AOP는 두 개 중요한 개념, 즉 “권력과 억압”을 언급하고 있다. 권력이 작동하는 억압관계의 개인적인 현실을 우선 사정하는 작업은 AOP 실천모델의 출발점이다. 억압된 구조에서 실제 경험한 감정을 느끼고 표출한 이야기를 듣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실천가는 억압 받은 자와 함께 억압에서 해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모델로 해석한다.

AOP 학자들은 I.M. Young(1990)이 제안한 억압의 5가지 유형-노동의 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착취”(exploitation), 사회의 의미있는 참여가 배제된 “주변화”(marginalization), 사회적 지위로 인해 자신의 삶 통제능력의 부재인 “무력감”(powerlessness), 지배집단의 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강화하고 평가하는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약자라는 지위로 당하는 정신적 물리적 “폭력”(violence)- 등으로 억압형태에 관한 인식을 갖는다. 억압의 5가지 유형들이 사회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5가지 기준으로 분석한다. 첫째, 억압이 사회에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가라는 “만연성”(pervasive)이고, 둘째, 그 유형들이 억압하는 강도 측면인 “제한성”(restrictive)이고, 셋째는 억압의 “위계성”(hierarchy)이다. 억압의 유형들이 작동하는 권력의 차이에 시선을 보낸다. 넷째, “복잡성”(complexity)이다. 억압유형이 상황과 거시와 미시적인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현실을 파악한다, 끝으로 억압유형이 약자와 강자의 관계와 사회체제에 작용하는 인식과 이해의 정도를 뜻하는 “내재성”(internality)이다. AOP의 계보 학자들은 억압의 유형들이 작용하는 실태를 5가지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클라이언트를 억압에서 해방하려는 실천론을 발전시킨다(Baines, 2011a; Barnoff and Moffatt, 2007; Mullay, 2010; Graham and Schiele, 2010). 이제 AOP를 구성하는 원칙들을 논의하자.

#### 2-4. AOP의 원칙

AOP는 억압받은 개인을 현존하는 사회체제에 잘 적응하고 기능하도록 돕는 “정상화”를 위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케이스워크(case work) 중심의 “전통사회복지실천론”을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실천적 패러다임”(a new paradigm)(Rush and Keenan, 2013), “접근”(approaches)(Dominelli, 1997; Burke and Harrison, 2009) 혹은 “관점”(perspectives)(Sakamoto and Pinter, 2005)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패러다임, 접근, 그리고 관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일관된 가치와 원칙에 기초한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Payne, 2014). AOP가 사회복지실천의 관점들 가운데 하나라 한다면, AOP 구성하는 주요 원칙들을 밝히는 것이 AOP 정체성을 밝히고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Clifford and Burke, 2005; Burke and Harrison, 2009)이 Dalrymple과 Burke의 반-억압실천론과 D. J. Clifford(1995, 1998)의 이론으로 AOP의 원칙들을 해명했다.<sup>3)</sup> 하지만 그들이 밝힌 원칙들은 AOP의 주요한 가치인 사회정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AOP의 주요한 사회정의 원칙을 살리면서 L. Dominelli의 이론 즉 적극적인 반-억압실천(dynamic anti-oppressive practice)을 중심으로 6가지 원칙을 정리했다.

#### 2-4-1. 급진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정의와 인권

세계사회복지사연합(IFSW, 2001)와 세계사회복지학회(IASSW, 2001)는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 차원에서 표방하고 있다<sup>4)</sup>. Dominelli(2009)도 사회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사회복지실천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여긴다. AOP가 인간중심철학을 구체화하는 실천으로 정의한 점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을 자신의 삶과 둘러싼 환경을 주체적이고 합리적 사고와 반성의 능력 의거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전제한다(2002a, Dominelli). 사회복지의 주체적인 존재라는 전제는 모든 인간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전달 받는 수동적인 수급자로서의 클라이언트 혹은 시장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소비자"(consumer)가 아니다.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 즉 서비스이용자 간에 관계가 위계관계의 권력이 아닌 평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주체적 존재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고 평등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책임감을 소유한 "능동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을 토대로 하고 있다(Banks, 2012a). 능동적 시민권에 기반을 둔 인권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Dominelli, 2004). AOP가 지향하는 인권 가치는 사회복지실천가와 개인이 개인의 사적인 수준에서 고통과 인권침해에 따른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만 초점이 있지 않다. 개인적 수준의 개입과

3) Clifford와 Burke(2005, pp. 683-685)는 Dalrymple와 Burke(1995)와 Clifford(1994)의 이론을 바탕으로 AOP의 원칙을 5가지 즉 사회적 차이, 성찰성(reflexivity), 역사적 차원, 상호작용 사회체계, 권력 등으로 밝히고 있다. Burke와 Harrison(2009, p.211)은 Clifford(1994)의 주장을 근거로 5가지 원칙, 즉 사회적 차이, 개인과 정치적 연계(linking personal and political), 권력, 역사 및 지리학적 위치, 성찰성/상호참여(reflexivity/mutual involvement) 등으로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은 6가지의 원칙을 제안한다. 앞에 두 학자들이 제시하지 않은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추가하고 권력과 사회적 차이는 포함하였고 성찰성은 비판적 반성에 포함시킬 수 있고, 역사적 차원과 역사 및 지리학적 위치 그리고 상호작용 사회체계는 복잡성 위칙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개인과 정치적 연계는 해방론적 실천의 원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2014(IFSW)년에는 사회복지(social work)의 중심 원칙을 사회정의와 인권뿐만 아니라 집합적 책임성과 다양성의 존중을 추가 한다.

함께 그 억압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지배권력과 자원의 재분배체제의 변화를 위한 제도와 문화수준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실천으로서의 시민권”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OP가 억압과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생산하는 악의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사회체계에 도전하고 서비스 자원을 재배분하는 사회구조와 과정과 실천 등의 변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을 강조한다. 단순히 물질적 자원을 불평등하게 연속적으로 배분하는 서비스 전달 구조의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 AOP는 불평등한 서비스 전달 구조를 재생산시키는 사회의 자원배분의 사회구조, 과정과 실천의 변화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자원 재생산을 체제를 강화하는 비물질적인 자원들을 변화를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요구한다. 예컨대 약자에게 배분하는 서비스 전달의 정책을 결정에 단순히 물질적인 자원분배 형태와 양을 결정하는 제도조건만 아니라 제도를 결정에 영향을 의사결정에 참여할 능력과 불평등 재생산하는 정책과 제도에 관하여 비판의식 증대를 위한 소통능력의 변화에도 무게를 둔다. 인 수준의 연대성 가치에 입 Banks(2012a)가 제안한 사회복지의 원칙 모델에 따라 표현하면 AOP는 사회 불평등에 도전하고 재화 배분구조의 변화를 통해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점에서 “급진적 사회복지실천”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AOP의 사회복지원칙은 Biesteck(1961)이 주장한 서비스이용자의 자기결정성, 비판단주의, 비밀보장, 개별화, 통제된 정서의 수용 등의 가치를 중시한 “칸트적 사회복지의 원칙”과 차별화한다. AOP의 시각에서 Biesteck원칙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이라는 점에서 “탈맥락화”(decontextualized)된 원칙으로 비판하고 억압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미시적, 중범위(messo), 거시적 수준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회 구조의 맥락을 외면한 사회복지실천의 원칙으로 평가한다(Dominelli,2004). Baines(2011)는 AOP를 “사회정의-지향실천”(social justice-oriented practice)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Dominelli(2009)는 “사회정의와 인권 기반 실천”(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based practice)으로 명명하여 사회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대변하는 실천론임을 강조한다.

AOP가 사회정의와 인권 가치를 표방하면서, 특히 L. Dominelli는 부(wealth)와 참여 그리고 인정의 영역에서 권력관계의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평등을 강조한다. O'Brien(2010,p.175)은 사회정의와 인권과 함께 평등의 가치는 AOP의 “중요한 차원”이자 “실천가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해석한다. AOP의 평등은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결과의 평등”과 “기회 평등”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대우”와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천가와 대등한 참여로서의 평등을 강조한다. 평등의 가치가 천부인권 차원에서 평등보다는 문화, 제도, 정책을 통해서 나타는 불평등을 변화시켜 평등을 실현하는 정치적 행동의 원칙을 강조하는 점에서 AOP는 “급진적 평등관에 의거한 사회 정의관”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Solas,2008).

전통사회복지실천은 실천가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 한 전문가로서 혹은 실천가들이 기관의

관료적 절차에 준한 기관의 요원으로서 클라이언트와의 불평등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OP는 클라이언트가 생활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적 지식" 혹은 "지역지식"(local knowledge) 과 삶의 현장에서 습득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존중한다. 이 같은 클라이언트의 지식은 사회실천가들이 외면할 수 없는 지식으로 지역사회의 사정과정에서 반영해야 요소라는 것이다(Dominelli, 2002a:126). 전통사회복지실천에서의 전문가로서의 실천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의사결정에 의거한 '하향식 실천개입'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한 자발성과 참여 그리고 자기결정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사회복지실천가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즉 파트너십을 통한 역량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최소한 개입"을 통해서 최대화하는 효과를 얻는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Dalrymple and Burke, 1995). 최소 개입 원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사회복지실천가가 주도적으로 진단하고 실천하기보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중심이 된 실천 즉 당사자 중심의 실천(people-centred approaches) 접근의 원칙도 수용하고 있다(Stier and Binyamin, 2010).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경험지식과 지역지식을 반영하고 인정하는 실천은 실천가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만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역민의 지식을 반영하는 참여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간의 상하 위계적 관계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의 중심실천은 상호 평등적 관계를 설정하는 원칙과 무관할 수 없다. AOP가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실천가들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반응하고 개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양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한 개인적 집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평등주의적 실천이 전개되면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서로가 실천의 개입전체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클라이언트는 실천개입과정이 그들이 소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갖는다면, 개입계획을 개발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입의 초기단계에서 마무리 단계에 까지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주인의식 고양과 함께 클라이언트 자신의 행동 방향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개인적, 집합적(집단적)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Dominelli, 2004, p.83)

L.Dominelli의 AOP는 미시적 차원의 일대일 상호작용에서 권력관계의 최소화를 위한 평등에 머물지 않고 제도적, 문화적 수준의 규율에 따른 구조적 평등을 요청한다.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 미시적 차원의 개인 간의 평등은 선한 의도는 인정하지만 클라이언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과 자원분배의 균형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불평등을 유발하는 억압의 기제는 반복하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평등을 위한 변화에 역점을 둔 사회정의를 실천할 것을 AOP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요구한다.

#### 2-4-2. 권력(Power)의 편재성과 정치적 역량강화

AOP는 권력개념을 AOP의 본질적인 요소 혹은 주요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Dominelli (2002a, 2004)도 Foucault(1980)와 Giddens(1993)의 입장을 수용하여 인간관계와 제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권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권력의 사회성”(social-ness of power)과 권력이 억압과 동시에 재창조하는 “권력의 이원성”(duality of power)의 입장을 수용한다(Millar, 2008). 권력의 사회성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과 언어에도 적용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에서 두 집단 간의 권력관계는 개인, 집단, 집합적인 맥락에서 초점을 두면서 서비스이용자는 실천가에 비해 권력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 제로섬 권력관계(zero-sum power relationship)에 근거하여 실천론을 전개한다(Dominelli, 2004). 이에 AOP의 권력시선은 약자의 저항 권력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면서 한 사람 혹은 집단의 독점성을 부정한다.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을 통제할 자원을 소유하고 상하의 고착된 관계로 가정하지 않고 피지배집단도 지배집단처럼 지배집단에게 통제에 저항할 자원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고착된 상하관계에 아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권력관계를 설정한다(Dominelli, 2002, 2004).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무권력자도 권력(the power of powerless)을 소유하면 권력자를 향해 저항과 분노 등을 표출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수용한다.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고착되고 일방적인 상하관계가 아닌 상황에 따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을 창조하거나 재창조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하여 어느 누구도 완전히 권력적이거나 전적으로 무능력하지 않다는 제로섬 권력관계를 부정한다.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어느 한 사람이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권력자가 무권력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무력자가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유동적인 권력 평등성’의 원칙을 AOP가 수용한다.

AOP의 권력의 평등성과 함께 권력의 이중성도 내포하고 있다. 푸코의 권력관을 수용하여 권력을 개인과 집단을 착취하고 주변화하는 억압 유형을 위한 “지배권력”(domination)의 도구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권력은 지배집단에게 저항하고 관계에 참여 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힘(forces) 즉 “협동권력으로서의 역량강화”(empowerment as concerted power)로 인식한다(Haugaard, 2010, 2012). 권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양면성의 전제를 수용하여 권력의 일방적 시각에서 탈출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AOP의 권력원칙은 역량강화를 실행하는 원칙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그 역량강화의 파워는 사회정의와 인권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즉 ‘비판역량’, ‘연대역량’, ‘평등역량’, ‘정치역량’의 등으로 구성하는 역량강화의 개념과 관련을 맺는다. 권력은 개인적인 의식수준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제도와 구조를 토대로 특권(privilege)을 생산한다. 그 특권은 행위자들에게 행사하여 불평등과 억압을 재생산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다. 그 진원지는 동시에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이데올로기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OP의 역량강화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의 통제권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는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권력의 진원지에 관해서 실천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재구성하는 주체능력을 소유하는 전제와 연계를 갖는다. 이 주체능력은 억압구조에서 벗어나는 해방공간을 창조하는 정치적 실천능력과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OP의 역량강화는 해방적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먼저 클라이언트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증대(consciousness-raising or conscientization: Freire, 1970)하는 내재적인 권력의 강화에 무게를 둔다. 주체적인 역량을 가진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억압적인 구조가 변화를 위한 진원지인 지배권력의 제도와 정책, 이데올로기와 실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특권의식을 이해하고 비판하여 사회정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훈련된 자아-주체화”(disciplined self-subjectification)의 역량을 촉진하는 과정이다(Haugaard, 2012). 역량강화는 비판역량과 함께 실천 참여자들 간의 권력 차이를 최소화는 평등관계를 위한 역량과 권력을 집합적으로 공유하여 사회정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연대역량”과 관계를 갖는다. 이 같은 연대역량은 개인과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정치적 역량강화로 연결될 때 정치적 해방공간의 창조 즉 실천의 목표 달성 수단이 된다.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강화는 억압구조와 불평등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클라이언트가 타인들과 연대하여 비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신장이기도 하다(Dominelli, 2002a, 2004, 2010a; Dalrymple and Burke, 1995). 그 실천은 다양한 맥락과 수준에서의 총체적인 개입과 연계시킨다.

### 2-4-3. 총체적 접근, 복잡성을 토대로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사정, 계획,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AOP는 그 요인들 “다차원적인 맥락”(multidimensionality of context)과 “수준”(levels)에 비추어 성격과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개입”(holistic intervention)를 한다(Dominelli, 2002a, 2010a; 총체적 개입 도표1). 사회복지실천가는 클라이언트에 내재된 가치, 지식, 믿음을 넘어 개인을 둘러싼 가족과 지역사회 등의 ‘복합적인 환경요인들’ 즉 “복잡성”(complexity)을 고려하여 실천하는 원칙이다.

사회복지의 복합적인 환경은 몇 차원을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의 자아에 영향을 주는 맥락, 제도, 문화, 지역, 국가, 세계적, 물리적/지리적, 영적 맥락을 고려한다. 이는 다시 개인의 심리적 수준과 개인 간의 대면적인 상호작용하는 미시적 수준(micro), 지역사회



의 단체와 기관과 조직은 중범위적 수준(messo), 그리고 거시적 수준(macro)은 세계화가 개인을 둘러싼 미시와 중범위 수준의 요인과 관련된 환경이다. 클라이언트의 삶의 경험과 사안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고 여러 맥락에 견주어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역사적 환경도 추가할 수 있다. 복잡성의 두 번째 요인은 상호 연계성(connectedness)이다. 거시, 중범위, 미시적인 수준에 작동하는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을 맺고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환경이다. 세 번째 환경적인 요인은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도(intensity)와 확장성(extensity)을 수 있다. 억압이 개인적, 제도적, 문화적 수준에서의 억압이 발생하는 과정, 그리고 세 가지 수준에서 작용하는 변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관계하여 억압이 개인과 타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그 확장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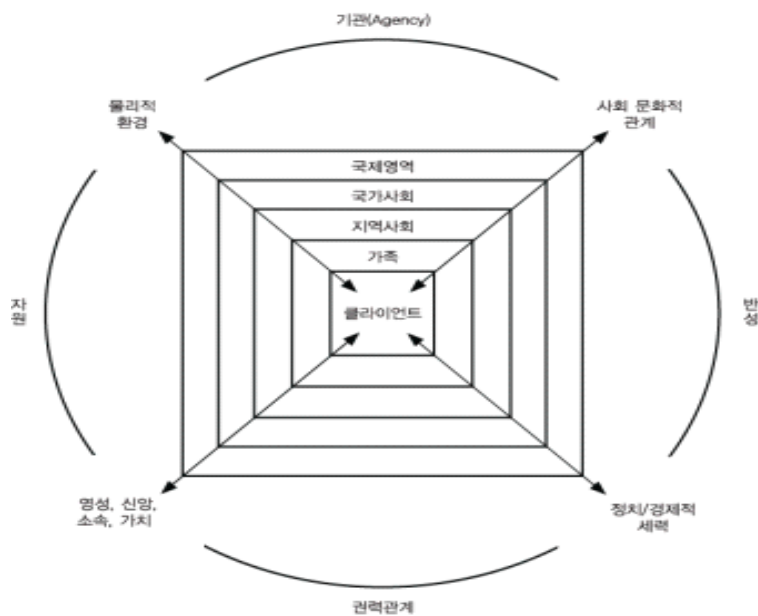
AOP복잡성<sup>5)</sup>의 네 번째 요인은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다. AOP는 클라이언트의 정체성을 급진주의적 실천론처럼 단순히 계급 범주만으로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정체성과 억압의 역동성은 계급이외에도 인종, 성인지, 나이, 장애성과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분열(social divisions)들이 복잡하게 작동하는 상호교차성도 실천의 복잡성 범주에 포함시킨다(Dominalli, 2010). 예컨대 상호교차성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클라이언트 개인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OP의 대변자들은 클라이언트의 억압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계급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작용하는 경로분석에 시선을 둔 “억압의 상호교차성모델”(Marsiglia and Kulis, 2009; Mullaly, 2010)과 언어와 국가, 성인지, 인종, 성적 지향, 종교, 장애성 등의 영역에 따라 자원접근의 권력과 특권의 순위를 표기한 “억압의 웹모델”(Sisneros et al. 2008; Mullaly, 2010)을 제안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그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사정은 단일 요인이 아니고 다양한 맥락과 복합적인 관계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비스이용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와 그 범위를 사정하는 사회복지실천의 복잡성을 AOP가 대응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입이 필요한 문제는 다양한 수준에서 문제의 원인이 존재하고 문제의 성격도 복잡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 역시 다양한 역할과 전문가와 실천가들이 참여함으로

5) 복잡성의 4가지 특징이외에도 Adams(2009)는 실천 복잡성의 “구성요인”(components)을 7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문제의 성격으로 문제의 다양성, 범위, 깊이로 성격을 구분한다. 두 번째는 실천의 역할로서 청자, 카운슬러, 치유자, 옹호자, 복지권리 상담자 등으로 구분한다. 셋째는 스태프의 지위로, 실천가로, 조장자로, 관리자, 복합역할로소 구분한다. 넷째는 상호전문적인 합의(interprofessional arrangements)에 따른 참여 역할로서 전문 자문 실천가, 다른 실천가들, 다학문적인 팀, 다양한 전문 팀으로서 구분이다. 다섯째는 사람과 파트너십을 수행하는 지위로서 서비스이용하는 사람, 돌봄이, 이웃공동체계의 성원, 개인전문가, 전문가 팀 등이다. 여섯째는 이해와 기술의 확장하는 방법으로, 상이한 학문적 지식들 도입과 상이한 ‘실천지식’(how to knowledge)의 도입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경계로 현존하는 실천의 경계의 확장, 실천 경계를 넘어서기, 경계에 관련하여 실천의 맥락화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복잡성의 자세한 것은 Adams의 저작(2009b)을 참고할 것.

써 실천에 동원되는 지식과 자원 그리고 권력관계가 다양하여 복잡한 관계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AOP는 사회복지실천에 직면하는 다양한 수준의 “복잡성”(complexity)에 도전하기 위하여 “복잡성 사고”에 기반 한 사회복지실천론을 제안한다. “복잡성 사고”(complexity thinking)는 뒤에서 논의할 “비판적 성찰순환성”의 구성요소로 포함된다(Dominelli, 2010a; Adams, 2009b).

도표 1: 반억압적 실천을 위한 총체적 개입 차트



출처: Dominelli(2002, p. 24 2010, p.166)

#### 2-4-4. 위험성을 고려한 사회적 다양성과 연대성

AOP의 복잡성은 억압자와 피억압자 간의 개입하는 요인의 다양성과 차이성의 원칙과 무관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AOP가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니즘에서 활용하는 이론적 자원은 다양성과 차이성의 가치이다. 이는 영국사회의 전통사회복지실천의 “동화주의”(assimilationism)의 비판에서 AOP의 특징을 드러낸다(Dominelli, 2002a,2004). 동화주의적 사회복지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지식을 과소평가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영국의 지배문화에 동조시켜서 그 사회에 적응/순응하도록 돕는 실천의 특징이 있다. 사회복지실천가는 클라이언트를 주류사회의 체제의 규범에 동조·편입시키는 기능을 강화하고 통제하는 실천을 “정상화의 과정”에 우선한다(Chambon,1999; Hölscher and Sewpaul, 2006). 동화적 실천과정은

전문가는 자신이 가진 정체성인 백인(엘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중산계급, 이성애자,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강요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외면할 수 있다. 실천가들은 차이와 다름을 형식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인정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거나 사회가 결정한 가치 범위내의 인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권력이 허용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차이성을 인정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성은 약자를 위한 차이성은 아니다. AOP는 인권과 시민권을 반영한 권력의 평등한 관계에 따른 차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AOP는 차별과 억압의 복잡성에 의해 생산되는 권력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정하는 “차이의 포괄성”(inclusionary of difference)의 가치를 표방하고 실천하기를 요구한다.

AOP는 다양성과 함께 연대성도 강조하면서 위험성도 경계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우리(us)”라는 통일성(unity)의 가치 표방이 클라이언트의 “그들”(they)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외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Dominelli, 2002). AOP는 사회복지실천가에게 사회정의와 시민권의 가치를 실천할 경우 혼자 보다 협동과 파트너십 등의 상호의존성에 의거한 연대와 신뢰 가치를 강조한다. 연대와 신뢰는 개인과 집단 간의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ship)의 사회적 관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그 안정성과 확실성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형성과 역동성을 중요시 한다. 상호의존성과 연대성의 신뢰는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에 제한된 자원을 확대하고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착취당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계약관계 밖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실천까지 확대한다.

한편 AOP의 연대성과 다양성의 가치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소유하며 두 개의 가치로서 관계의 균형을 가질 때 부정을 최소화하고 긍정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라는 연대성 가치는 폐쇄성과 배제성에 의한 “타자화”(othering)를 강화하며 다양성을 외면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연대성이 갖는 위험을 대비하는 대칭적인 실천원칙을 차이성과 다양성으로 설정한다. 실천가와 클라이언트들이 소유한 문화가 달라 실천의 장벽에 직면할 때 이를 극복하는 원칙으로 다양성과 차이성을 수용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자신의 문화와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서로가 인정하며 교류를 통해서 서로 공생하는 “외교관”(envoy)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살리는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의 배양은 다양성과 차이성이 내포한다. 하지만 차이성과 다양성에 의거한 문화적 역량강화가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위한 실천역량과 결합되지 않으면 차이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AOP의 원칙이다. 문화적 역량강화와 함께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연대하여 개인과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적 실천역량을 AOP가 요구한다(Parrott, 2009). 연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이성과 다양성을 우선하는 실천은 “분과주의(divisionism)”(Webb, 2009) 혹은 “개인주의(individualism)”(Nicols and Cooper, 2011; Huston, 2014) 형태로 귀착될 수 있는 위험을 각인시킨다. AOP는 연대성과 차이성은 변화하는 사회

적 환경에서 유연한 평등한 관계와 포괄적인 차원에서 실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배와 피지배, 억압자와 피억압자로의 상하 권력관계에 의한 억압의 형태들이 지속될 수 있는 위험에 주목한다. AOP는 연대성과 차이성과 다양성이 갖는 강점과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주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AOP의 복잡성 원칙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써 비판적 반성의 원칙과도 연결된다.

#### 2-4-5. 비판적 반성(Critical Reflection)

비판적 반성은 AOP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간주한다(Dominelli, 2004; 2009). 사회복지실천가가 소유한 가치, 지식과 기술이 실천과정과 결과에 효과적으로 적용·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실천한 것과 자신들이 실천해왔던 것에 관해서 생각한 것을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반성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성찰적인 존재가 되고 비판적 행동을 한다. (Dominelli, 2004, p. 250)

비판적 반성은 실천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AOP는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서 권력을 공유하며 책임윤리를 실천하고, 관계형성이 불합리한 지배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에서 포괄적인 차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천을 요구한다. 그들이 경험하는 억압구조의 변혁을 위한 실천과 그 윤리(Clifford and Burke, 2009)에 관한 “비판적 반성실천”을 중시한다(Leonard, 1997; Dominelli, 2002a). 그래서 비판적 반성을 사회복지실천의 동반자로 여긴다.

AOP를 주도하고 동조하는 학자들은 비판적 반성의 실천을 “순환과정”으로 인식하고 4가지의 단계를 제안한다. 하나는 사회복지실천가 자신이 자신을 대상으로 소유한 내면적인 요소인 기술, 지식과 가치 그리고 감정 등을 검토하는 “자기반성”(self-reflection) 혹은 “성찰성”(reflexivity)이다. 둘째, 내면과 외부 요인과 함께 다양한 맥락에서 작동하는 요인들을 복잡성의 시각에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지배권력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바로 “비판적 반성실천”(critical reflection practice) 혹은 “비판적 반성 인식”(critical reflection awareness)이다. 셋째, 클라이언트에게 작동하는 억압적 구조를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당연히 수용하는지 혹은 그들이 권력자들이 생산한 담론에 순응하는지 등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활동이다. 둘째와 세 번째 활동은 자신을 넘어 사회복지를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맥락을 대상으로 하는 비판적 추론 활동이다. 넷째, 세가지 비판적 반성 활동을 근거로 “비판적 성찰순환성”(critical reflexiveness)이다. 실천가와 클라이언트와 함께 실천하는 현실을 이해·분석하는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결과를 평가하고

반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는, 즉 경험-반성-행동-변혁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천하는 활동이다.(Adams, et al., 2005).

AOP의 비판적 성찰순환성은 Schön(1983)의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을 확장시킨다. 반성적 실천은 실천현장에서 사전 정해진 매뉴얼과 규율에 기반 한 기술-합리성(technical-rationality)의 지식과 기술을 비판하고 사회복지실천가 자신의 실천경험을 토대로 반성한 두 가지 활동으로 진행한다. 하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실천하면서 반성하는 "행동과정에서 반성"(reflection-in-action)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결과를 두고 반성하는 "행동이후 반성"(reflection-on-action)이다. AOP의 비판적 성찰순환성은 Schön의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 권력관계를 반성실천에 무게를 두면서 복잡한 맥락을 고려하여 반성적 실천의 지평을 확장한다.

AOP의 실천가는 실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직면하기 마련이다. 그 장애를 극복하고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실천 방법을 모색하거나, AOP실천의 역행을 사전 예방하는데 도구로서 비판적 반성에 근거한 성찰순환의 과정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과 정부가 요구하는 법과 절차에 우선하는 절차주의(proceduralism)의 관행에 익숙하여 새로운 실천하기 어렵다. 관리주의(managerialism)도 가세한다. 사회복지기관과 정부는 "통제"가치에 우위성을 두고, 조직의 생산적 결과(productive outputs)와 "덜 투자 하고 더 많은 것"(to get more for less)을 얻고자 하는 효율성과 관계 중심 실천 보다 "좋은 비즈니스 실천"(good business practice)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에 관심을 두는 관리주의의 뒷에 걸려서 사회정의와 인권가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한다(Newman and Clarke, 1994; Sepaul and Hölscher, 2006). 절차주의와 관리주의는 신자유주의 조건에 저항하고 그 장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의 공간과 담론을 창출하는 조건의 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배권력의 관계와 헤게모니 과정을 이해하고 변화를 위한 비판적 인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판적 반성은 AOP의 "해방적 접근"의 중요한 인식도구로 간주한다.

해방적 접근은 "정치적 해방"의 실천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기에 비판적 반성은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실천가는 비판적 성찰순환성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은 실천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이 문제를 대응하는 전문적인 주체능력을 증대 할 수도 있다. 비판적 성찰순환성은 "좋은 실천"을 위한 기술 이자 실천적 지혜(practical wisdom)를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AOP실천가에게 실천의 본질적인 요소로 간주한다(Dominelli, 2009; Adams, 2009).

#### 2-4-6. 해방적 실천, 혁명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

AOP의 대변자인 Dominelli(2009,p. 53)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실천은 실천의 목적

과 역할의 기준에 의거하여 크게 세가지 접근전략을 “현상유지 접근”, “치유적인 접근”, “해방론적 접근” 등으로 분류한다. 현상유지 접근은 정부와 복지기관의 관료적 규율과 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목적을 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실천방식들이고, 치유적인 접근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적 기능을 강화는 실천이론들이 해당된다. 이에 반해 해방론적 접근은 “사회주의-집합적인 관점”으로서 현상유지와 치유적인 접근보다 포괄적이며 변혁적인 접근이다(Garret, 2013b, Payne, 2014).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개인 문제를 미시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의 거시적인 구조를 변혁하고 집합적인 시각에서 실천하려는 접근 방식이라는 뜻이다.

해방론적 접근의 범주에 들어가는 AOP는 현행 사회구조의 변혁을 개인이 아닌 집합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실천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표방한다. 실천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억압을 재상산하는 권력구조(관계)를 변화 시키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AOP는 “해방론적 정치”(emancipatory politics)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Garrett, 2013a, 2013b; Gray and Webb, 2009). AOP의 정치 입장은 페미니스트들이 외쳤던 “개인문제는 정치적이다”(Hanisch, 2006)라는 전제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지배권력자의 이데올로기의 작동기제를 비판하였던 비판이론의 시각을 수용하고 있다(Baines, 2011b). 변혁의 시선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하는 억압구조의 수준을 넘어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체계를 통해서 개인에 미치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는 “변혁적 정치”(transformative politics)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Wright, 2012; Gray and Webb, 2013b). 사회 정의와 인권의 원칙에 의거 사회제도를 복합성의 차원에서 사정하고, 권력과 지배관계를 비판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행복 증진을 위한 대안제안을 위한 “실천의 정치”(politics of practice)를 Dominelli(2010)가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3R”로 표기하는 실천의 정치는 사회 실천가들에게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인정하는데 초점을 두는 “인정”(recognition)과 지배 권력자들에게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표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신하여 실천가들이 지원하고 집합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옹호 혹은 “대변”(representation) 그리고 불평등한 자원에서 평등한 자원으로 변화시키려는 “재배분”(redistribution)의 정치적 실천으로 제안한다. L.Dominelli의 3가지 정치적 실천은 경제적 차원에서 자원 재분배에 역점을 둔 계급체제의 변화를 위한 정치활동과 함께 Honneth(1996, 2004)와 Fraser(2000, 2003, 2005) 제안한 인정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제도적인 수준에서 인정을 받는 문화적 “인정의 정치”의 이분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 혹은 “대변”(representation)을 주장한 Fraser(2013)의 사회정의관에 근거한 정치 실천론과 일치하고 있다.

억압하고 차별하는 개인과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변혁적 실천”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해방적 정치실천론이라 할 수 있다(Dominelli, 2010b, p. 173). 여기서 변혁은 급진주의가 표방하는 사회적 혁명의 의미가 아니다.

사회복지실천이 급진적인 혁명가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를 개혁을 위한 “변화”와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의 “연속성”을 표방하는 점에서 개혁의 의미와 가깝다. 따라서 AOP가 해방적 접근을 표방하지만 사회변화를 위한 혁명적인 정치실천론이 아니고 지속성을 가진 변화로써의 변혁을 강조하는 정치 실천론을 표방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힌 AOP의 실천원칙을 전통적인 접근에 견주어서 사회복지실천원칙과 해방론적 접근의 AOP 실천론의 특징을 표2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전통적인 접근의 사회복지실천론 과 해방론적 접근의 AOP실천론의 특징 비교

실천 관점	전통적인 접근의 사회복지실천론	해방론적 접근의 AOP실천론
실천의 수준	미시적 수준: 개인과 가족에 한정	다차원 수준과 맥락의 복잡성: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세계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	실천가(전문가) 중심/ 전문가 중심 지식 중시	실천가와 주민 함께/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의 지식 중시
클라이언트 인식	부족하거나 병리적 존재로서 대상 (objects)으로 가정	주체적인 능력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변화를 모색는 주체 (subjects, agency)로 가정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절차와 통제에 기반한 현상유지와 심리치유전문가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개인과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전문가
사회문제해결의 접근 방식	개인의 심리적 치유에 제한	개인 심리적 치유와 사회구조 권력관계의 변화를 함께 모색
실천의 학습	수퍼바이저(전문가)에 의한 성찰	동료와 수퍼바이저에 의한 비판적 반성
실천의 목표	사회체제의 유지와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가 중심의 기술, 지식	사회체제(억압적인사회체제)의(대안적인)변화를 위한 기술, 지식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관계	온정주의적/ 상하 위계관계	평등한 동반자로서 연대성
권력관계	지배관계(power over)중심과 상하관계 인정	권력 공유관계(power with)와 수평관계 중시
정치 입장	정치적 무관/ 중립성	해방적 정치 행위 표방
실천가치/윤리	사회체제의 적응/조건부 다양성	사회적 불의에 도전과 저항, 인권 존중/ 포괄적 다양성 인정
역량강화	개인 수준의 삶의 통제력 강화	개인과 집합적 수준에서 변화를 위한 비판 의식, 연대와 평등의 역량제고, 역량상실 경계

#### 2-4-7. AOP의 장점과 비판들

AOP의 관점은 개인의 미시적인 수준에서 심리적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체제의 적응에 초점을 둔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의 접근을 넘어 실천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실천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AOP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에게 비판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클라이언트 개인의 내면적인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부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사회의 권력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있다. 거시적인 권력구조 변화를 통해서 서비스전달 구조와 절차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개인에게 작동하는 억압과 차별구조를 변화시켜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구조적 변혁의 실천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Sakamoto and Pitner, 2005, Baines, 2011b). 사회정의와 인권, 평등성 등의 윤리적 가치와 연계된 실천론을 제공하여 사회복지실천이 가치실현에 근거한 실천론임을 강조하여 실천의 방향을 뚜렷하게 설정한 강점이 있다. 가치에 토대를 두지 않는 실천론은 ‘강자를 위한 좋은 기업실천론’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AOP는 사회정의를 표방하면서 개인변화만 아니 지역사회와 거시적 수준의 정책과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론을 전개하여 미시와 거시적 실천을 통합하는 실천론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

권력의 편재성과 역량강화원칙은 약자에게도 권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권력의 최소화를 지향하면서, 그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역량강화 관점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권력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개인적인 역량강화의 수준에서 집단수준에서 비판, 연대, 정치 등의 역량강화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약자의 억압과 차별을 다양성과 복잡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개입하는 “효과적인 방향”(effective avenue)도 시사했다(Sakamoto and Pitner, 2005). 실천가들이 총체적인 개입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비판적 반성의 순환과정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실천의 결과에 대하여 단순한 평가와 반성의 수준을 넘어 반성 실천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했다. 권력구조 변화를 위한 비판적 사과와 행위를 결합한 비판적 반성 순환과정을 강조한 것은 실천가 자신들이 구조적 변혁과 변혁의 연속성을 직면케 하여 새로운 실천과 현존 실천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반성적 실천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반성실천의 모델을 제공했다. 사회구조변화와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자신들의 변화를 강조한 AOP는 당연히 정치적 실천과 무관할 수 없다. 현존하는 사회체제가 억압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하는 현실과 사회복지실천가가 마주치면 그는 구조변화에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등 정치적 중립보다 정치적 개입을 요구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AOP는 사회복지실천은 정치적 개입 즉 “실천 정치”의 당위성을 인정할 뿐만 정치적 실천의 지평을 확장했다. 단순히 개인의 강점과 지역사회와 사회제도 차원에서 인정과 함께 물질적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계급 정



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와 심리적인 차원에서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인정에 바탕을 둔 “정체성의 정치”와 평등한 사회체제를 구축을 위해 약자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참여평등성을 강조한 “참여정치”를 결합시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정치론적 실천론’을 위한 지식을 제공했다. 사회복지실천에 구조변혁을 위한 정치적 개입의 당위성은 학자들에게 AOP의 장점을 인정하기 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McLaughlin, 2008).

본 논문은 AOP의 비판을 시대별로 그리고 AOP의 체제를 부정하는 ‘강한 비판’과 AOP의 원칙은 인정하되 AOP 관점에 부족한 요인들을 부각시키는 ‘소극적인 비판’으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비판에 대한 AOP를 변호하는 학자들의 반론은 또 다른 논문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AOP가 등장하자 이를 부정하고 우려하는 비판들이 전통적 사회복지실천론을 선호하는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AOP의 창조자이자 대변자인 L.Dominelli는 AOP를 겨냥한 비판들이 건전한 비판이기보다는 AOP 자체를 부정하고 신자유주의 입장과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세력들의 “반발”(backlash)로 간주한다(Dominelli, 2002a, p. 13). AOP의 반발 세력으로 간주되었던 학자들은 클라이언트를 사회체제에 적응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면서, AOP의 억압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사회복지실천을 정치적 “선전”(propaganda)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한다(Appleyard, 1993; Pinker, 1993; Phillips, 1993, 1994). AOP 실천가들의 실천은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실천의 기준에 벗어나면 실천으로서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실천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는 사회변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AOP에 헌신하는 실천가는 “정치적 광신자들”(political zealots)이라고 비판하였다(Phillips, 1994, p. 50). 정치적 행동의 기준에 의하여 사회복지실천이 평가받기 때문에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기보다는 자유에 역행하는 실천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Pinker, 1993; Phillips, 1993, 1994).

그들은 또한 AOP는 실천과정에 언어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 예컨대 AOP 실천가들이 약자에게 사회변화를 위한 비판의식을 강화하는 과정을 비판가들은 약자들을 “도덕화”(moralising)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AOP실천가들은 도덕화 혹은 비판 의식화하는 전문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의식화를 명분으로 진행하는 도덕적 가치를 인식시키는 활동은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과 물질적 변화를 위한 활동이기보다는 ‘갑’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언어변화에만 주로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실천론이라 비판한다. “나는(약자) 여전히 돈 한 푼도 없다. 그렇지만 많은 단어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Philpot, 1999 p. 13은 McLaughlin, 2008, p. 43에서 인용)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AOP의 비판은 사회복지실천학술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Ghail and Haywood(1997)와 Williams(1999) AOP가 억압과 차별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단순하게 설정했다고 ‘소극적인 비판’도 있다. AOP의 주요한 원칙들을 인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작동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이론적 자원의 부족에 시선을 둔 비판이다. 억압이 억압자와 피억압자 간의 단순한 사회적 위상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와 다양성은 인정하면서, 억압의 복잡성이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진입하여 AOP의 비판은 이론자체의 내부어로 시선을 둔다. AOP는 ‘사회 복지를 전공한 학자와 사회복지실천가에게 인정받고 그들에 의하여 통제 받는 실천론이지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한 실천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AOP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복지실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지식과 연대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학자와 실천가와 비교할 때 클라이언트가 차지하는 위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전달에 관해 클라이언트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정도는 여전히 학자와 실천가만큼 동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Wilson and Beresford, 2000,p.569). 이 같은 비판은 AOP는 도덕화의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Philpot(1999)의 비판과도 무관하지 않다.

AOP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수사적인”(rhetoric) 실천론이라는 ‘강한비판’을 받는다(Humphries, 2004). AOP는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실천을 요구하지만, 실제 실천가들은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사회정책과 제도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천가들은 클라이언트를 “돕거”나 “돌보”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경우 실천가는 이민법의 규제에 의거하여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천가들은 제도적 규제에 의거 서비스전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법 제도가 가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실천가들의 변화와 저항은 “걸치레”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지배권력집단과의 권력을 비교할 때 미흡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Humphries(2004)는 AOP가 억압과 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실천은 ‘그럴듯한 위선’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멈출 것을 주장한다.

AOP는 억압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거시적인 실천을 옹기 힘들기 때문에, AOP는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대인관계의 사소한 요소”(minutiae of human interaction)에 초점을 둔 실천론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평등관계를 위한 행동규정과 올바른 언어를 선택했는가에 시선을 둔 비판이다. 이는 도덕의 교화접근에 기반 한 실천 성향을 소유하기 때문에 실천가는 도덕적 우월성을 갖는 언어에 의존하기 쉽다. AOP는 “행위가 아닌 언어”(words not action)에 훨씬 많은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McLaughlin, 2008). 실천가들이 AOP의 원칙에 관련한 담론을 클라이언트에 내재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언어를 통한 인식능력의 증대가 문화적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물질적 기반에 근거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등

식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물음을 제기한다. 예컨대 변화를 강조하는 억압적 불평등 구조, 반성, 평등성 등의 언어 사용이 사회현실의 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이다. 구조적 변혁을 위해 언어 창조와 그 의미부여에 문화적 인정의 가치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실천론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보다 학술적 작업에 더욱 지향함으로써 AOP는 엘리트적이며 권위적이 성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AOP가 지향하는 평등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Danso, 2009). 약자에게 도덕적인 교화를 위한 도덕적인 우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전문가적인 언어의 인식을 내포한 AOP는 노동계급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계급과 친화력을 가지며, 이는 평등관계보다 권위적인 지위에서 “통제”의 형태를 지향하는 실천성향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도와 정책차원에서 변화를 강조하는 AOP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내재하고 있다는 유사한 비판을 받는다. 예컨대, 외국인이주와 망명자의 경우, 이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지식과 정보의 소유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피억압자인 클라이언트는 전문가의 지식을 수용하는 "온정주의적 사회관계"가 형성되기 쉽다는 것이다. 실천가는 구조변화를 위한 의식제고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약자인 클라이언트는 그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평등한 관계보다는 불평등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실천론 혹은 "교사와 학생의 뒷에 걸린 실천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Sakamoto and Pinter, 2005; Parrott, 2009).

AOP가 강조한 정치적 실천은 실제로 미시적인 관계의 정치에 집중하고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해방적인 사회운동을 펼치기가 어려운 실천론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AOP는 거시적인 변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은 실천가들이 직면하는 조직과 정책수준의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정치 실천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변혁을 위한 정치실천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미시적인 맥락에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패배의 정치”(politics of defeats)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한다(Mclaughlin, 2005, p.56). 보수주의적 정치가와 언론인들은 AOP는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실천론이라는 특징에 주목하면서 “조롱당한 사회복지실천론” (Mclaughlin, 2005, p.41) 혹은 “탈정치화된 사회복지실천”(depoliticising social work)이라고 비판을 했다(Mclaughlin, 2008, p.41).

AOP에 관한 소극적인 비판도 계속된다. AOP가 실천(practice)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이 아닌 실천의 가치에 근거한 원칙들로 구성하고 있는 실천론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딜레마를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인 기술의 부재 탓으로 돌린다(Parrot, 2009).

또 다른 비판의 시선은 기능주의의 시각으로 AOP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시선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가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들이 많이 있다. 사

회구조적인 변혁 즉 제도와 사회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경우 개인과 조직, 국가기관과 갈등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AOP의 실천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실천가의 기대와 목표와 다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이해관계자는 예기치 않는 행동과 결과에 따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약자가 경험한 억압사례에 관한 진실폭로는 개인주의적인 정치적 행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조직과 인간관계를 배신하는 정치행위로 평가받을 위험도 있다. 그리고 그 폭로에 따라 기관과 권력자에 낙인찍히는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주변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지배권력을 향한 비판의식을 강화할 경우 그들이 억압당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Sakamoto and Pitner, 2005). 따라서 AOP가 서비스이용자의 편에서 역량(권력)을 강화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아닌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수하기 위해 방어역량을 강화하는 결과 즉 “가장 심화된 역설적인 결과”(deepest ironies)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Millar, 2008). AOP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는 결과를 생산하기보다 예기치 않는 결과 즉 지배자가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OP의 핵심 원칙인 권력작용의 메카니즘에 관한 비판적 시선도 있다. AOP가 실천현장에 직면하는 구조적 쟁점과 변화를 부각시킨 실천론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실천하는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발현시키는 이론적인 시각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있다(McLaughlin, 2005; Millar, 2008).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사회구조변혁을 위한 정치적 실천을 시행할 때, 국가는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전달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비로운 서비스복지제공자”(benign welfare provider)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으로 간주한 시각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McLaughlin, 2008). 억압과 차별구조의 유지와 변화를 위해서 변혁적 실천에 개입하는 조직과 집단을 국가가 “자비로운 국가”로서 권력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혁실천에 대응하는 국가 이론을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AOP의 주요 실천원칙인 권력관에 관한 ‘소극형’ 비판도 있다. AOP가 권력 개념을 중시하지만 실천현장에서 다양한 권력행사 즉 악의적 혹은 자비로운 권력유형에 관한 담론의 부재이다(Tew, 2006; Gaventa et al, 2011). Tew(2006)의 “권력관계의 모체”(matrix of power relations)에 따르면 AOP의 권력의 틀은 단순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분석하는 권력의 유형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Tew, 2006). Gaventa와 동료들이(2011) 제시한 “권력의 큐브”(power cube) 모델에 따라 AOP는 권력관은 권력의 관계 유형은 존재한다. 하지만 AOP는 권력의 형태인 “가시적”(visible), “비가시적”(invisible), “숨은”(hidden)의 권력유형과 이러한 권력의 형태들이 전개되는 참여공간의 형태와 지역의 수준들이 결합한 권력관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권력모델들은 사회복지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대처하는 AOP의 복잡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OP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경시한 실천론이라는 비판도 소극적 비판범주에 들어간다.

AOP는 현상유지적 실천론과 치유적인 실천론을 비판하고 클라이언트의 환경 즉 사회 구조의 변화에 우위성을 둔 해방론적 접근론이다. AOP의 사회구조가 아닌 다시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요인과 비판의식에 시선을 두고 비판을 한다. 실천가가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AOP는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Payne, 2005). 충분한 처방의 부재는 AOP가 사회복지실천가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 이론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판과 무관할 수 없다(Gardner, 2008). 또한 미시적인 실천의 지식이 부재한 채 실천의 가치와 원칙만을 강조할 경우 AOP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한 실천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de Montigny, 2011). 현장 사회복지실천가는 과정도 중시하지만 결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적 인식변화와 함께 사회억압의 구조 변화를 위한 원칙을 중시할 뿐 AOP가 구체적인 실천론이 부족한 관계로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쉽게 수용할 없는 실천론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3. 한국사회복지실천론에 던지는 AOP의 함의

지금까지 우리는 영국사회복지현장의 배경에서 탄생한 AOP의 등장배경, 연구성향, 정의, 원칙과 비판 등의 순으로 AOP의 정체성을 밝혔다. “해방적인 접근”에 근거한 AOP는 현상유지적 접근과 치유적인 접근에 기반 한 정통적인 사회복지실천론에 도전하고 새로운 실천방향과 지식을 제공했다.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구조 변화를 위해 필요한 반-억압적 이론과 실천적인 지식은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변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희망과 동시에 어둠을 보여주었다. AOP가 한국사회복지실천에 던지는 함의는 사회복지실천과 사회 변화를 위한 “적용가능성” 혹은 “쓸모성”의 측면에 무게를 두고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전환을 위한 이론적 지평의 확장이다. 한국사회실천론의 이론과 지식은 주로 미국학자들의 “체계와 생태론적 이론”(system and ecological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엄명용, 2005; 최일섭, 2007). 사회복지실천론의 주요 교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학의 교재들도 미국학자의 이론들에 편중되어 있다(양만재, 2012). 이 같은 지적인 자원의 편향은 미국이외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실천론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영국태생 AOP의 고찰은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지평의 확장과 더불어 일방적인 ‘편향’에서 ‘다소 균형’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AOP의 진원지가 미국이 아니고 영국의 진원지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로 확산·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학계가 거의 소개되지 않은 환경을 감안하면 AOP 연구의 필요성은 증대될 수 있다. AOP는 계급사각에서 사회주의적 변화를 추구하는 급진사회복지실천에서 태동하여 계급이외 다른 인종, 성, 나이, 장애인 등의 요인에 따라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이론이

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급진 혹은 진보적인 사회복지실천론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천가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Dominelli, 2007).

한국사회복지실천론은 미국학자의 체계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실천과정에서 권력과 특권에서 비롯된 억압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고 변혁을 위한 실천이론의 부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최영민, 2014). Payne(2014)은 체계이론과 생태론 이론에 익숙한 국가의 실천가와 학자들은 그 이론들을 비판할 능력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감안해도 변혁이론의 부재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AOP가 억압과 권력에 비판적 성찰적 실천에 초점을 둔 “비판사회복지”(critical social work)(Allan et al., 2009)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복지실천론의 지식과 실천의 방향을 확장하는데 지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현장에서의 변화의 요구를 AOP가 부응할 수 있는 쓸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AOP의 쓸모성의 여부는 먼저 한국사회복지계가 처한 상황과 그 요구사항을 인식하는데서 가능하다. 학자들(김기덕, 2014; 최영민, 2014; 박선영, 2016)의 주장에 의거하여 그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복지제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에 의해 사회복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정의와 인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자원의 재분배를 모색을 위한 역량강화실천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이 현존하는 사회체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실천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가 관리와 통제의 실천에서 “불평등 완화와 사회정의”의 가치를 실현을 위한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정의가 아직도 부재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 기관들이 무엇이 사회복지실천이고 어떻게 하는 것을 목적과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개념 규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박선영, 2016, p.57). 이에 박선영(2016)은 IFSW가 2014년에 사회복지실천의 정의관에 의거하여 ‘사회’를 살리는 방편으로 사회변화가 강조되는 정의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실천 방식이 클라이언트의 개인수준에서 ‘심리적 치유접근 방식’에 취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가들은 개인의 책임을 부과하는 기제를 넘어 병원이나 시설을 유일한 대안으로 처방을 내리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사회문제에 대해 상담이라는 매체를 통해 각 개인, 가족을 포함한 집단 차원으로 축소하여 대응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은 사회불평등을 생산하는 억압과 차별 사회체제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집합적 대응의식도 약화된(조주현, 2012; 신경아, 2013; 김기적, 2014; 최영민, 2014; 박선영, 2016).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 방식을 박선영(2016)은 Payne(2005)의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실천방식은 두 가지 방식 즉 개인의 심리변화에 근거한 “치료적 성찰”실천과 사회체제의 순응과 적응에 역점을 둔 “개인주의적 개혁주의적” 실천에 취중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정의와 인권가치를 반영하여 집합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억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이며 집합적인” 실천에 소홀했

다는 것이다. 전자 두 가지의 접근에 근거한 실천방식에다 후자인 집합적 실천방식을 통합한 전체적 실천을 위한 통찰을 키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구를 박선영(2016)은 토인비 홀과 헐 하우스가 주도한 인보관운동의 사상에 서 선별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한국사회복지실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 논문은 AOP의 원칙을 우리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인보관운동의 사상보다 훨씬 유용하게 한국사회복지계의 요구사항을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 AOP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 구조적 불평등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사회불평등의 구조를 변혁시키는 사회복지실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만으로 한국사회복지가 요구하는 첫째와 두 번째 사항을 충족시킬 만한 지적 자원을 품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AOP가 지향하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변화는 대면적인 상호작용관계에서의 권력차이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변화 즉 물질적 재분배를 위한 사회체제의 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복지실천이 요구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론이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의 인식과 관행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실천론이기도 하다. 세 번째 요구인 한국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인 실천의 위한 통찰도 L. Dominelli의 시각을 빌려 표현하면 현상유지 접근과 치유적인 접근을 통합한 “해방론적 접근”에 관한 통찰과 다름없다. AOP는 한국사회복지실천계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지적인 자원이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AOP의 6가지 원칙들이 한국사회복지실천계에 어떤 영역에서 쓸모성이 있는지를 기술하자.

AOP는 개인의 비판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체제를 변화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증대하는 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AOP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와 함께 실천할 것을 주장한다. 그들이 함께하는 활동은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대와 평등의 가치도 추가한다. 특히 AOP는 정의에서 그들 간의 권력차이를 최소화하는 평등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 먼저 지식권력차원에서 평등관계를 설정한다. 클라이언트가 소유한 삶에서 축적된 경험적 지식은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소유한 과학적 지식만큼이나 실천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는 페미니스트와 포스트모던 사상에 기반 한 권력의 편재성과 유동성이다. 사회복지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로 의사소통을 통한 협조/협상하여 권력을 창조하거나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가나 클라이언트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통제권력을 갖거나 완전히 무능하지 않다는 전제가 내포하고 있다. 무능자도 상황에 따라서 권력자가 될 수 있고 권력자 역시 무능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가의 일방적 권력행사의 위험을 인식시켜 그들 간의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는 실천의 전문적인 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AOP의 정의와 권력관은 한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론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 김미옥과 정하나(2013)가 분석한 한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동향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역동적인 실천관계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어떤 인권관점에 기초하여 실천한 것인가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천가와 클라이언트의 미시적인 관계는 AOP의 “유동적인 권력관계”의 프레임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그들 간의 인권 윤리적인 측면은 AOP가 지향하는 평등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다.

AOP의 권력관점은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부응하는 권력유형에 관한 세부적인 시각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있다(Tew, 2006). 그러나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이즘에 의거한 AOP의 권력의 편재성과 상황에 따라 무력자에게도 권력이 있다는 권력의 유동성 개념은 한국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실천가가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이라는 Max Weber의 권력관계와 제로섬의 관점에 의거하고 있고, 사회복지실천에서 권력에 관한 이해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할 때(최영민, 2014; 이현주·성정숙, 2014)에서 AOP의 권력관점은 무용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론을 바탕으로 전개한 억압적인 사회구조 변혁을 위해 비판, 연대, 평등 그리고 정치 등의 주체적인 역할을 반영한 AOP의 역량강화론도 적용가능성의 가치가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나 권력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세력화의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개인적임 심리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학계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국사회복지학계가 권력의 다양한 시각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을 풍성하게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이현주·성정숙, 2014; 김기덕, 2013a)에 AOP가 반응할 자원이 있다는 것이다. Dominelli(2014)는 기든스의 "권력의 이원성"과 푸코의 "담론적 실천"에 의한 권력론을 AOP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주체로서의 AOP의 역량강화론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이 견지한 클라이언트를 인식하는 전제를 전환할 수 있다. 한국의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를 ‘복지의존자’로 분류하여 병원이나 시설을 유일한 대안으로 처방하고, 복지상담사 혹은 치료사 자격증 획득에 열중하고 있다(박선영, 2016). 이것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이 클라이언트가 병리적이거나 결함이 있거나 내적으로 취약하거나 위협적인 충동을 소유하거나, 사회에 적응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결함을 치유하고 처방하는 사회복지실천모델’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AOP는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결함을 치유하는 실천방식에 비판적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OP의 복잡성 사고에 근거한 총체적인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원칙이다. 오늘의 사회복지실천론이 사안에 대해 행정당국이 요구하는 업무처리에 우선하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으로 개입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우선한다(박



선용, 2016). 또한 개입에 적용되는 주요이론도 인지행동기법을 주로 활용하고, 실천의 환경 맥락도 국내에 국한되어 있으면 세계적인 맥락에 견주어 실천현장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정순돌, 2005). 단순한 환경맥락에서 단일한 심리학적 실천기법에 의한 가시적 결과에 우선하는 실천을 AOP의 복잡성 원칙에 의거 해석하면 이렇다. 한국의 사회복지실천가들은 다양한 맥락과 복합적인 수준에 견주어 권력관계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비스이용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는 복잡성원칙에 기반 한 총체적 개입이 부족하다는 말로 풀이 할 수 있다. AOP는 전체성 기반의 실천을 보강할 장점을 갖고 있다.

복잡성의 접근은 현실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직면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의 계층이 다양함에 따라 “다양성과 차이성”의 실천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이 증가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또한 1990년대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2007년들어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법이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종복, 2012).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복지실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 관심은 실천가들이 주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와 우리문화가 서로 공존하며, 실천가 자신이 지닌 한국문화의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사고에 따라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소수집단에 차별과 억압하지 않는 “문화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신성자, 2013). 이주자와 성소수자의 차별과 억압의 해소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이 포괄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역량강화만으로 부족하다(성정숙·이니영, 2010). 차별과 억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역량강화와 함께 제도적인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억압과 차별은 고용허가제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성소수자의 차별은 차별금지법안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실천(학)계는 억압과 차별을 생산하는 제도변화를 위한 실천적인 대응에 관해서 거의 외면해 왔다.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복지(학)은 급변하는 현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적 역량강화와 이 실천에 따른 위험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억압과 차별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변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양만재·김안나, 2016). AOP의 다양성과 연대성의 원칙은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적 역량과 더불어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위해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대성에 근거한 AOP의 해방론적 정치실천(인정, 재분배, 옹호 등의 실천의 정치)은 한국사회복지학에서 오랫동안 외면한 미시적인 관계변화와 결합된 거시적인 사회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천과정에서 장애를 만나지 않을 수 없다.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는 총체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실천의 난관인 관리주의와 절차주의를 극복하는 실천방안으로 비판적 반성을 제안한다(Askeland and Fook, 2009; Morely and Macfarlane, 2014). AOP를 대변하는 학자들은 비판적 반성의 개념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연

속적인 순환과정을 도입하여 비판적 성찰순환성의 모델에 의거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dams, et al., 2005). 비판적 성찰순환성으로 AOP를 겨냥한 비판들 즉 AOP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엘리트주주의적 실천, 온정주의적 관계, 거시적인 사회구조변화가 아니라 미시적 권력관계에 무게를 둬으로써 패배정치적 초래, 그리고 의도치 않는 결과의 대응부재 등의 다양한 비판들은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수행하는 비판적 성찰순환성의 모델로서 방어하고자 한다(Dominelli, 2004, 2012).

한국사회복지(학)계도 사회복지실천가들에게 반성적 실천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이근무·김영숙, 2009; 최옥채 외, 2014; 최영민, 2014). 실천가들이 더 좋은 실천의 결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반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한다. 그들은 비판적 반성보다 “비판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반성과 성찰의 개념을 도입한다. 실천가의 내적 자기점검과 실천의 현실적인 제약과 가치 간의 간격사이에서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형식지를 비판하고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통합한 통찰력을 활용하는 실천방식이다. 이 같은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은 직면하는 장애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방법”과 익숙하고 “판 밖의 사유”의 방법에 따른 실천에서 탈출하는 실천방식으로 평가하고(이근무·김영숙, 2009) 또한 실천가들이 성찰 일지를 통합 경험적 분석을 통해 성찰적 반성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옥채외, 2014; 최영민, 2014). 한국사회복지(학)계가 현장에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데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간의 권력관계의 매트릭스에 초점을 두는 비판적 반성과 그 순환성의 개념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복지(학)계도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의 재생산하는 개인과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한 실천으로 발전해야 하고 실천가들이 관료주의에 직면하여 점차 전문성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 환경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관리주의에 지배받는 조직문화에 비판적 거리를 두는 역량도 필요하다. 실천가들이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사회복지실천 환경에서 지배받기보다 전문성의 지위를 증대하는 방안으로서 한국 사회복지학계는 AOP의 “비판적 성찰순환성”을 실천가를 위한 교육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AOP가 억압과 차별을 생산하는 개인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변혁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제도적 접근을 위한 인정의 활동, 불의에 직면하여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권리를 옹호하는 대변의 활동, 그리고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물질적인 자원구조의 변화를 위한 재분배의 활동은 바로 사회정의와 인권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학)계가 사회변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에 대한 연구와 행동에 소홀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에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AOP를 활용할 가치는 있다.

한국사회복지계가 AOP의 이론적 자원을 수용하고 활용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이나 제약적인 요건 즉 영국사회복지계처럼 반란도 존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

의 체제를 주도하는 사회복지정책당국과 보수 성향을 가진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론자들과 언론기관이다. Dominelli(2009)는 사회복지실천계에 AOP의 도입을 저항하는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보수주의적 권력집단이라 했다. 복지의 민영화, 부의 양극화 증대, 고용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의 심화를 조성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정치세력과 정책기관들은 시장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거역하고 권력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는 AOP의 원칙과 이론을 환영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가 신자유주의와 시장중심의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정부가 사회복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역하는 AOP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다. AOP의 약점들을 부각하여 영국의 비판가들이 외쳤던 언어들, 정치적 선전을 위한 실천 혹은 사회복지사를 정치적 광신자들로 낙인찍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들은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좌익 내지 '좌빨집단'으로 낙인을 찍는 정치문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학)계의 AOP 도입과 적용은 선망의 실천론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실천론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사회복지(학)계의 교육적 환경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복지학계가 미국 중심의 교과과정(전선영, 2005)과 미국에서 발달한 사회복지이론과 실천론 즉 “체계기반 접근”(system-based approaches)에 익숙하다(엄명용, 2005; 최일섭, 2007). 체계와 생태계 접근론은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인 구조에 내재한 권력관계에 대한 시선은 외면하고 있는 관계로 권력관계와 억압의 구조에 역점을 두는 AOP를 한국사회복지실천계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현행 텍스트와 논문에서 권력관계에 관한 실천과 이론의 소개가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입은 장벽이 낮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AOP에 관한 논문과 소개가 거의 전무한 한국 사회복지학계의 조건에서 AOP를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현장과 복지기관의 환경도 장애요인이다. AOP는 사회복지실천가에게 실천변화를 위한 인식변화와 사회변화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서의 요구가 높다고 할지라도 실천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는 기관과 조직의 권력자들의 저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Yang, 2011). 한국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토대로 사회복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주의이다. 사회복지기관들은 경영기법과 수익에 우선하는 “경영 원리에 우선하고, 투입과 과정보다 생산과 결과를 선호하며, 공공성과 민간과 자원영역 간의 경계성의 애매성, 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하는 효율성, 경제성과 효과성의 원리에 따라 복지조직을 경영하는 분위기가 확산된다(McDonald, 2006; Hölster and Sewpaul, 2006; Harris and Unwin, 2009). 수급자의 효율적인 관리는 명분을 내세워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의 실천 보다는 정부의 제한된 예산과 자원에 맞춘 사정과 개입에 우선하고 사례관리 실천에 따라 단기적인 결과를 얻는 실천에 익숙한 조건이다. Lena Dominelli(2004)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복지실천가는 “관계기반 실천”(relation-based practice)보다는 “기술관료

적”(techno-bureaucratic) 실천이 관행화되어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아닌 정부의 규제에 순응하거나 기관의 이익산출에 우선하는 “관료화된 역량강화”를 실천하기 쉽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복지기관의 일부 책임자들은 실천가들이 클라이언트들로 하여금 복지기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실천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적인 태도도 있다. 이 같은 조직의 환경은 AOP를 수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AOP의 정체성을 등장배경, 정의, 연구 경향, 주요원칙과 비판 등을 검토하고, AOP가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적용가능성 즉 쓸모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AOP가 영국 사회의 배경에서 1980년대에 등장하여 서구사회복지학계가 AOP를 다양한 복지실천영역으로 확대·적용하여 이론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사회복지학에는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AOP는 “성우”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상을 인정받지만, 학자들은 그들의 국가현실에 견주어 AOP의 적용타당성에 관한 비판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학)계의 AOP도입은 인식의 확장차원에서 볼 때 쓸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 사회변화를 모색하는 ‘사회’를 회복하는 사회복지실천론을 사회복지학계가 요구하고 있다. AOP가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OP의 적용가능성을 인식의 차원을 넘어 행동의 차원으로 고려하면 상당한 장벽들이 있다. AOP가 지향하는 사회 구조변화를 위한 정치적 행위는 ‘좌빨’이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복지실천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AOP는 한국사회복지(학)계에 빛과 어둠을 동시에 내포한 사회실천론이지만, 필자는 AOP에 연구를 한층 진행시켜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AOP는 한국사회복지계가 요구하는 사항 즉 사회복지실천의 개념규정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통한 ‘사회’를 살려내는 도전적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통찰력과 실천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사회복지(학)계가 세계사회복지(학)계에서 ‘고아’로 머물 수 없다는 상황판단에서 이다. AOP가 서구사회복지(학)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을 보수적인 성향을 띤 학자들이 AOP를 비판할 시점인 1990년대 초반으로 정할 경우 한국사회복지(학)계는 약 25년 동안 AOP에 거의 외면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 확산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를 한국사회복지(학)계가 대응 한다면, AOP를 향해 문제제기를 제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학계가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학문의 정통에 견주어 AOP의 이론과 실천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변형하는 연구를 진행할 때 사회적

지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통합하는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국사회복지(학)계가 더 이상 정책과 제도적인 개혁을 위한 정치적 실천에 관한 논의를 외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이 사회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사회복지현장에 표방하면서도 억압구조를 재생산하는 제도와 정책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행동에 관해서 한국사회복지(학)계가 거의 무관심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듣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정치행위 차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선 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론에서 탈출하여 보다 정치적 행위를 인정하는 진보적이며 비판적인 사회복지실천론을 갈급하는 학자들과 실천가들에게 AOP는 ‘생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주로 문헌데이터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경험적 현장의 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실천가의 이야기를 토대로 AOP를 다양한 복지현장을 대상으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물론이고 AOP와 다른 실천론과의 비교연구, 또한 AOP의 비판 담론에 관한 연구 등으로 확장하여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이론과 실천 지평을 넓혀 나가길 원한다.

## 참고문헌

- 김기덕, 2013, “유동하는 사회복지실천의 누빔점”, 2013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위커숍자료집』, pp.1-18
- 김기덕, 2014, “현대사회의 특성과 사회복지의 위상: 바우만(bauman)의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이론 중심으로”, 『2014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회』, pp.163-185.
- 김미옥·정하나, 201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이용자 옹호의 관계 -서비스과정에서의 이용자 권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 및 실행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 65(4), pp.115-136.
- 김성이, 2005, “한국사회복지교육의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Vol.1. No.1 pp. 1-18.
- 박선영, 2016, “이시대 사회복지실천의 쓸모: 사회복지실천은 ‘변화’에 기여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 51-85.
- 성정숙·이나영, 2010, “사회복지를 위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의 비평과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Vol.62, No.2. 5. pp.349-373.
- 신경아, 2013, “시장화된 개인화와 복지욕구”, 『경제와 사회』, 98, pp.266-308.
- 신성자, 2013, “다문화 사회로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문화적 역량제고 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6(2). pp.61-88.
- 양만재, 2012, “지역사회복지정체성에 관한 비판적 분석: 지역사회복지학 교재의 이론적 지식

- 과 가치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36호, pp.101-151.
- \_\_\_\_\_, 2013, “‘통합’지역사회 역량강화 실천과정모델의 연구 모델”, 『비판사회정책』, 41, 95-150.
- 양만재·김안나, 2016, “한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반억압 실천(Anti-oppressive practice) 적용 가능성 연구”, 『2016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p.53-75.
- 엄명용, 2005, “한국사회복지실천 현장 내 기본 실천기술의 실증적 확인 및 분류”,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1, pp. 61-91.
- 이강희·양희택·서대석, 2011,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서울
- 이근무·김영숙, 2009,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의 본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4 11. pp.217-241.
- 이현주·성정숙, 2014, “한국 사회복지 임파워먼트 연구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4년 춘계학술대회한국사회복지학회』, pp.1-26.
- 전선영, 2005,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교육과 옹호 태도 및 전략의 인과 관계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4. 11. pp.35-65.
- 정종화·김육진·김제선·김혜성·박영란·전석균, 2013, “한국사회복지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한국사회복지교육』, Vol.23. pp.1-37.
- 조주현, 2012, “후기 근대화 사회적인 것의 위기, 아고니즘의 정치의 가능성”, 『경제와 사회』, 95: 163-189.
- 최명민, 2014,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과 성찰성”, 『2014년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정기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pp.189-217.
- 최옥채·유영준·용효중, 2014, “성찰적 사회복지실천 교육론:성찰일지 중심으로”, 『2014년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정기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실천학회. pp. 225-287.
- 최일섭, 2007, “한국사회복지학 실천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국제학회국제학술발표대회』, pp.201-212.
- Admas, R., 2009, “Being a Critical Practitioner”, In R. Adams, L.Dominelli and M. Payne (eds), *Critical Practice in Social Work*, London: MacMillan. pp.233-248.
- Admas, R., Dominelli, L. and Payne, M.(eds), 2005, “Transformation Social Work”, In *Social Work Futures: Crossing Boundaries, Transforming Practice*, In R. Adams, L. Dominelli and M. Payne (eds), *Critical Practice in Social Work*, London: MacMillan.
- Allan, J. Briskman, L. and Pease, B., 2009, *Critical Social Book*. Crow Nest: Allen & Unwin.
- Argis, C. and Schön, D.A., 1976, *Theory in Practice; Increasing Professional Effectiveness*, San Francisco: Jossey-Bass.
- Appleyard, B., 1993, “Why paint so black a picture”, *The Independent*, 4 August.

- Aronson, J. and Smith, K., 2009, "Managing Restructured Social Service: Expanding the Social?",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0(2), pp.530-547.
- Askeland, G.A. and Fook, J., 2009, "Critical reflection in Social 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Vol.12.No.3. pp.287-292.
- Bailey, R. and Brakes, M., 1975, *Radical Social Work*. London: Edward Arnold.
- Baines, D. (2<sup>nd</sup>), 2011a,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 \_\_\_\_\_, 2011b, "An Overview of Anti-Oppressive Practice: Roots, Theory, Tensions", In Baines, D (2<sup>nd</sup>).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pp.1-27.
- \_\_\_\_\_, 2011c, "An Overview of Anti-Oppressive Social Work Practice: Neoliberalism, Inequality, and Change", In Baines, D (2<sup>nd</sup>).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pp.28-48.
- \_\_\_\_\_, 2011d, "Unions: A Vehicle for Anti-oppressive Resistance", In Baines, D (2<sup>nd</sup>).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pp. 265-288.
- Banks, S., 2007, "Becoming Critical: developing the community practitioner", in H. Buthcher, S. Banks, P. Henderson and J. Robertson (eds) *Critical Community Practice*, Bristol: Polity Press.
- \_\_\_\_\_, (4th edn), 2012, *Ethics and Values in Social Work*,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Barnoff, L., and Moffatt, K., 2007, "Contradiction Tensions in Anti-Oppressive Practice in Feminist Social Sciences", *Affilia: The 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22. pp. 56-70.
- Beckett, A. E., 2013, "Anti-oppressive pedagogy and disability: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pp. 1-19.
- Biesteck, F., 1961, *The Casework Relationship*, London: Allen & Unwin.
- Brown, C.B., 2012, "Anti-Oppression Through a Postmodern Lens: Dismantling the Master's Conceptual Tools in Discursive Social Work Practice", *Critical Social Work*, Vol. 12. No.1, pp. 34-65.
- Cemlyn, S., 2008, Human Right Practice: Possibilities and Pitfalls for Developing Emancipatory Social Work, *Ethics and Social Welfare*, 2(3), pp. 222-242.
- Chand, A., Clare, J. and Dolton, R., 2002, "Teaching anti-oppressive practice on a diploma in social work course: Lecturers' experiences, students' responses and ways forward", *Social work Education*, vol.21, pp. 7-22.
- Clarke, J. & Newman, J., 2000, "The managerialisation of public services", in J. Clarke, A. Cochrane & E. McLaughlin (Eds) *Managing Social Policy*, pp. 13-31. London: Sage.
- Clifford, D. J. (1994). "Critical Life histories: a key anti-oppression research method", in

- Humphries, B. and Truman, C. (eds) *Rethinking Social Research*, Aldershot: Avebury.
- Clifford, D., 2016, "Oppression and Professional ethics", *Ethics and Social Welfare*, Vol.10. No.1. pp.4-18.
- Clifford, D. and Burke, B., 2005, "Developing Anti-oppressive Ethics in New Curriculum", *Social work Education*, Vol.24, No.6, pp.677-692.
- \_\_\_\_\_, 2009, *Anti-oppressive Ethics and Values in Social Work*,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Coleman, H., Rgers. G., and King, J., 2002, "Using potofolios to stimulate critical thinking in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Education*, Vol.19. No.1, pp.29-43.
- Collins, S. and Wilkie, L., 2010, "Anti-Oppressive and Social Work Student's Portfolios in Scotland", *Social Work Education*, Vol.29, No.7, pp.760-777.
- Curry-Stevens, A., 2011, "Persuation: Infusing advocacy practice with insights from anti-oppression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12(4), pp.345-363.
- Dalrymple, J. and Burke, B., 1995, *Anti-Oppressive Practice: Social Care and the Law*,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 \_\_\_\_\_, (2nd edn), 2006, *Anti-oppressive Practice: Social Care and the Law*, Maidenhead: Open University Press.
- Danso, R., 2009, "Emancipating and Empowering De-Valued Skilled Immigrants: What Hope Does Anti-Oppressive Social Work Practice Offer?",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9, pp.539-555.
- de Montigny, G., 2011, Beyond anti-oppressive practice: Investigation reflexive social relations, *Journal of Progressive Human Services*, 22, pp.8-30.
- Dominelli, L., 1993, *Social Work: Mirror of Society or its Conscience?* Sheffield: Department of Sociological Studies.
- \_\_\_\_\_, 1996, "Deprofessionalising Social Work: Equal Opportunities, Competence and Postmodernism", i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6, pp.153-175.
- \_\_\_\_\_, 1998, "Anti-oppressive practice in context", In R. Adams, L. Dominelli and M. Payne (eds), *Social Work, Themes, Issues and Critical Debates*, London: Macmillan.
- \_\_\_\_\_, 2002a, *Anti-Oppressive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_\_\_\_\_, 2002c, "Values in Social Work: Contested Entities with Enduring Quality", In R. Adams, R. Dominelli and M. Payne (eds), *Critical Practice in Social Work*, London: MacMillan.
- \_\_\_\_\_, 2004,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for a Changing Profession*,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06, *Women and Community Action*, Bristol: Policy Press.



- \_\_\_\_\_, 2009, “Anti-oppressive practice: the challenge of the twenty-first century ”, in R. Adams, L.Dominelli and M. Payne (eds), *Social Work, Themes, Issues and Critical Debates*, London: Macmillan. pp.49-64.
- \_\_\_\_\_, 2010a, “Anti-oppressive practice”, In M. Gray and S. A. Webb(ed), *Ethics and Value perspective in Social Work*,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160-172.
- \_\_\_\_\_, 2010b, *Social Work in Globalizing*, London: Polity Press.
- Dumbrill, G.C., 2011, “Doing-Anti-Oppressive Child Protection Casework,” in Baines (2011) (2nd edn),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pp.51-65.
- Fay, J., 2011, “Let Us Work Together: Welfare Rights and Anti-Oppressive Practice”, In Baines, D (2<sup>nd</sup>).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pp.64-78.
- Foucault, M., 2008, *The British of Biopolitics: Lectures at College de France 1978-1979*. Basingstoke: Palgrave.
- Ferguson, H., 2003, “Outline of a Critical Best Practice Perspectives in Social Work and Social Ca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2(8), pp.1005-1024.
- Ferguson, H., 2008,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itical best practice in social work”, in K. Jones, B. Cooper and B.Ferguson, (eds). *Best Practice in Social Work*,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 15-37.
- Ferguson, I. And Woodward, R., 2009, *Radical Social Work Practice: Making a difference*, Bristol: Policy Press.
- Fish, J., 2008, “Invisible No More? Including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in Social Work and Social Care”, *Practice: Social Work in Action*, 21(1), pp.47-64.
- Fook, J., 2002, *Social Work: Critical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 Fook, J. and Askeland, A., 2007, “Challenge of Critical Reflection: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Social Work Education*, Vol. 26. No.5. pp. 520-533.
- Freeman, B., 2011, “Indigenous Pathway to Anti-oppressive Practice”, in Baines (2011).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pp.116-132.
- Gardner, F., 2003, “Critical Reflection in Community-based Evaluation”, *Qualitative Social Work*, (2), pp.197-212.
- Garrett, P. M., 2013a, *Social Work and Social Theory*, London: Sage.
- \_\_\_\_\_, 2013b, “Mapping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Terrain of Social Work”, in Gray, M and Webb, S.A.(ed), *The New Politics of Social Work*,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44-62.
- Gaventa, J. and Colleagues., 2011, “Power Cube” <http://www.powercube.net/wp-content/uploads/2011/04/powerpack-web-version-2011.pdf>.

- Ghail M.M. and Hayyhood, C., 1997, "The End of Anti-oppressive Education? A Differentialist Critique",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Vol.7. No.1. pp.21-34.
- Gray, M. and Webb, A., 2009, "The return of political in social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8(1), pp.111-115.
- \_\_\_\_\_, 2013a, *The New Politics of Social Work*,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_\_\_\_\_, 2013b, "Towards a 'New Politics' of Social Work", In M. Gray and A. Webb(ed), *The New Politics of Social Work*,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3-20.
- \_\_\_\_\_, 2013c, "Towards an Issue-based Politics in Social Work Education", C. Noble, H. Strauss and B. Littlechild, *Daft chapter for Global Social Work Education: Crossing borders and blurring boundaries: IASSW*, pp. 1-21.
- Green, S. and Chambers, L., 2011, Research as Practice: The Community-Based Research Practicum as Anti-Oppressive Social Work Education, In Baines, D (2<sup>nd</sup>).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pp.162-176.
- Gutierrez, L. M., Parsons, R. J., & Cox, E. O., 1998,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A Sourcebook*. Pacific Grove, CA: Brookes Cole.
- Hackett, S., 2000, "Sexual aggression, diversity and the challenge of anti-oppressive practice", *The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5(1), pp.4-20.
- Hanisch, C., 2006, "The Personal Is Political: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classic with a new explanatory introduction", <http://www.carolhanisch.org/CHwritings/PersonalisPol.pdf>.
- Harris, J., 1998, "Scientific Management, Bureau-Professionalism, New Managerialism: The Labour Process of State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8(6), pp.839-862.
- \_\_\_\_\_, 2003, *The Social Work Business*, London: Routledge.
- Harris, J. and Unwin, P., 2009, "Performance management in modernised social work", in J. harris and V. White (eds) *Modernising social work: Critical considering*, Bristol: Policy Press, 9-30.
- Hauggard, M., 2010. "Power: A 'family resemblance' concept",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3(40), pp.419-438.
- \_\_\_\_\_, 2012, "Rethinking the four dimension of power: domination and empowerment", *Journal of Political Power*, Vol.5 No.1. pp.33-54.
- Hines, J.M., 2012, "Using an Anti-Oppressive Framework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Lesbians", *Journal of Gay and Lesbian Social Service*, 24, pp.23-39.
- Houston, S., 2014, "Beyond individualism: Social Work and Social Ident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17 doi:10.1093/bjsw/bcu097.
- Hölscher, D. and Sewpaul, V., 2006, "Ethics as a Site of Resistance: Te Tension Between Social

- Control and Critical Reflection”, Research Reports, Vol.1 pp.251-272.
- Humphries, B., 2004, “An unacceptable role for social work: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y”,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34. pp.93-107.
- IFSW/IASSW(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Social Work), 2000,2014, (Global)Definition of Social Work, <http://ifsw.org/get-involved/global-definition-of-social-work/>
- Kam, P.K., 2012, “Back to the ‘Social’ of Social Work: Reviving the social world profession's contribution th the promotion of ocial Justice”, *International Social Work*, pp.1-25.
- Larson, G., 2008, “Anti-Oppressive in Mental Health”, *Journal of Progressive Human Services*, 19, 1, pp.39-54.
- Leonard, P., 1997, *Postmodern Welfare: Reconstructing an Emancipatory Project*. London: Sage.
- McDonald, C., 2006, *Challenge Social Work: The Context of Practic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MacDonald, J. E., 2008, “Anti-Oppressive Practice with Chronic Pain Suffers”, *Social Work in Health Care*, Vol.47(2), pp.135-156.
- Maclaughlin, K., 2005, “From ridicule to institutionalisation: Anti-oppression, the state and social work”, *Critical Social Policy*, 25(3), pp.283-305.
- \_\_\_\_\_, 2008, *Social Work, Politics and Society: From radicalism to othodoxy*, Bristol: Policy Press.
- Martin, G.W. and Younger, D., 2000, “Anti oppressive practice: a route to the empowerment of people with dementia through communication and choice”,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7, pp.59-67.
- Millar, M., 2008, “‘Anti-Oppressiveness’: Critical Comments on a Discourse and its Context”,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8, pp.362-375.
- Mullaly, B., 1997, *Structural Social Work: Ideology, Theory and Practices*, Toronto: Oxford Press.
- \_\_\_\_\_, 2007, *The New Structural Social Work*, Toronto: Oxford Press.
- Nicolas, L.C. and Cooper, L.B., 2010, “Individualism and Its Discontents in Social Work: Proposing a Counternarrative for a New Vision of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rogressive Human Services*, 22, 84-100.
- Nissen, L.B. and Curry-Stevens, A., 2012, “Evolving on purpose: Results of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how public youth system reform advocates apply anti-oppressive practice framework in a collaborative training and action process”, *Action Research*, 10(4), pp.406-431.
- O'Brien, M., 2010, “Social justice: Alive and well(partly) insocial work practice”. *International*

- Social Work*, 54(2), 174-190.
- Parrot, L., 2009, "Constructive Marginality: Conflicts and Dilemmas in Cultural Competence and Anti-Oppressive Practice", *Social Work Education*, Vol.28, No.6, pp.617-630.
- Payne, M.(3<sup>rd</sup>), 2005, *Modern Social Work Theory*,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_\_\_\_\_, 2009, "Critical reflection and social work theories", in R. Adams, R. Dominelli and M. Payne (2<sup>nd</sup> edn), *Critical Practice in Social Work*, London: MacMillan.
- \_\_\_\_\_(4<sup>th</sup>), 2014, *Modern Social Work Theory*,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Payne, M., and Askeland, G.A., 2008,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Social Work: Postmodern Change and Challenge*, Aldershot: Ashgate.
- Penketh, L., 2000, *Tackling institutional racism: Anti-racist policies and social work education and training*, Bristol: The Policy Press.
- Phillips, M., 1993, "An oppressive urge to end oppression", *The Observer*, 1.August.
- \_\_\_\_\_, 1994, "Illness liberalism", in S. Dunant. (ed), *The War of the Words: The Political Correctness Debates*, Virago, pp.35-54.
- Philpot, T., 1999, "Editor's introduction: the modern mark of Cain", in T. Philpot (ed) *Political correctness and social work*, London: IEA Health and Welfare Unit.
- Pinker, R., 1993, "A Lethal Kind of Looniness",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10 September.
- Pollack, S., 2004, "Anti-oppressive Social Work Practice with Women in Prison: Discursive Reconstruction and Alternative Pract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4, pp.693-707.
- Reynolds, B.C., 1946, *Rethinking Social Casework*, San Diego: Social Services Digest.
- \_\_\_\_\_, 1951, *Social Work and Social Living*, Citadel Press.
- Reynolds, J., 2007, "Discourses of inter-Professionalism",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7, pp.441-457.
- Rogers, J., 2012, "Anti-Oppressive Social Work Research: Reflections on Power in the Creation of Knowledge", *Social Work Education*, vol.31. pp.866-879.
- Ross, M., 2011, "Social Work Activism Admire Neoliberalism", In Baines, D (2<sup>nd</sup>).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pp.251-264.
- Rush, M. and Keenan, M., 2013, "The Social Politics of Social Work: Anti-Oppressive Social Work Dilemmas in Twenty-First-Century Welfare Regim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pp.1-18.
- Sakamoto, I., 2007, "A Critical Examination of Immigrant Acculturation: Toward an Anti-Oppressive Social Work Model with Immigrant Adults in a Pluralistic Society", *British*

- Journal of Social Work*, 37, p.37. pp.515-535.
- Sakamoto, I. and Pinter, R.O., 2005, "Use of Critical Consciousness in Anti-Oppressive Social Work Practice: Disentangling Power Dynamics at Personal and Structural Level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5, pp.435-452.
- Stier, R., 2007, "Anti-Oppressive Research in Social work: A Preliminary Defini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7, pp.857-871.
- Strier, R. and Binyamin, S., 2010, "Developing Anti-Oppressive Service for the Poor: A Theoretical and Organisational Rational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0, pp.1908-1926.
- \_\_\_\_\_, 2013, "Introducing Anti-Oppressive Social Work Practices in Public Services: Rhetoric to Pract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pp.1-18.
- Tew, J., 2006, "Understanding power and Powerlessness: towards a framework for emancipatory practice in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Work*, 6910, pp. 33-51.
- Thompson, N. (3rd ed), 2001, *Anti-Discriminatory Practic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Todd, S. and Coholic, D., 2007, "Christian Fundamentalism and Anti-Oppressive Social Work Pedagogy",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27(3-4), pp.5-25.
- Turbett, C., 2014, *Doing Radical Social Work*,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Webb, S. A., 2001, "Some Consideration on the Validity of Evidence-Based Practice in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 pp.57-79.
- \_\_\_\_\_, 2009, "Against difference and diversity in social work: The case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18. 307-316.
- Wehbi, S., 2011, "Anti-Oppressive Community Organizing: Lesson from Disability Rights Activism", In Baines, D (2<sup>nd</sup>). *Doing Anti-Oppressive Practice*. Halifax/Winnipeg: Fernwood Publishing. pp.132-145.
- Williams, C., 1999, "Connecting anti-racist and anti-oppressive theory and Practice: retrenchment or reappraisal?",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9(2), pp.211-230.
- Wilson, A. and Beresford, P., 2000, "Anti-oppressive practice: Emancipation or appropri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0, pp.553-573.
- Wright, E. O., 2012, "Transforming capitalism through real utopia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https://www.ssc.wisc.edu/~wright/Published%20writing/Presidential%20address%20--%20uncorrected%20page%20proofs%20--%202012.pdf>.
- Yang, M. J., 2011, "Community Empowerment Practice in South Korea: Towards Developing a Local Model for Practice", Ph.D thesis, Durham University,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 pp.1-363.

Yee, J. Y., Hackbusch, C., & Wong, H., 2013, “An Anti-oppression (AO) framework for child welfare in Ontario, Canada: Possibilities for systemic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19. doi:10.1093/bjsw/bct141

Young, I. 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